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 I.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 참고 사례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인권보도준칙 1차 개정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인권 현안 등을 중심으로 편집되었습니다.
2. 이 책자는 인권보도준칙과 여러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기준 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기자협회의 공식 견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3. 이 책자에 실린 언론보도 사례는 미디어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수집자료와 언론보도 관련 심의자료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사례집 최종 검토 과정에서 현장 기자, 언론 분야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이 책자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언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언론이나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뜻이 없습니다.



## 참고 사례집, 이렇게 활용해주세요.

1.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주제별, 영역별 기사자료를 소개하고 인권 친화적인 보도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언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장할 만한 보도’와 ‘지양해야 할 보도’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2. 2부에서는 현장 언론인들이 인권보도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준칙, 기준, 요강 등을 수록했습니다. 현장 언론인들의 기사가 관련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능한 최신 자료를 폭넓게 수집했습니다.
3. 언론단체와 일부 인권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계층 등에 대한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 및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앞으로도 언론인들이 다양한 인권 현안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외부 기관 및 전문가의 견해 등은 ○, 권장할 만한 좋은 보도는 😊, 지양해야 할 보도는 😞 로 표기하였습니다. 언론사와 기자 이름, 기사에 등장하는 실명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 취재 과정 및 보도 이후 유의사항



인권보도는 의도와 결과뿐만 아니라 취재 과정과 사후 대응도 중요합니다. 인권 보도의 취재 대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일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인권보도 실천 매뉴얼 등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현장 언론인들이 인권보도의 이해를 넓히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취재 및 인터뷰이 섭외 시 유의사항

#### 가. 일반적 유의사항

- ① 취재에 앞서 취재 동기, 경위, 소요 시간, 취재 및 보도의 의도와 목적, 보도 방식 등을 분명하게 밝힌 뒤 동의를 구해주세요.
- ② 섭외 시 소속 언론사와 신분을 알리고, 소속 기관에서의 역할도 설명해주세요.
- ③ 언론인이 아닌 척하고 접근하는 모습은 지양해주세요.
- ④ 인터뷰를 원치 않을 때는 되도록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 ⑤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을 통한 취재는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 ⑥ 대중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취재원 또는 인터뷰이에게는 인터뷰 내용과 사진이 어떻게 사용될지 설명해주길 권합니다.



- ⑦ 이주민·난민, 노인,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동의를 구할 때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주세요.

## 나. 인터뷰 대상자별 유의사항

- ① 재난 피해자 섭외 시 피해자가 속한 기관 등의 대표자와 먼저 소통한 뒤, 피해자와 개별 접촉을 해주세요. 해당 인터뷰가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② 감염인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하거나, 보도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주세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취재할 때는 감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주세요.
- ③ 장애인 취재 시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관련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주민·난민을 취재 대상으로 고려할 때,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정만으로 취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점검해주세요.
- ⑤ 아동·청소년 인터뷰 시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취재 보도의 동의 과정에서 미숙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⑥ 북한이탈주민 섭외 시, 신뢰할 만한 지원단체의 협조를 구하도록 권장합니다.

## 2. 취재 및 인터뷰 시 유의사항

### 가. 일반적 유의사항

- ① 인터뷰이와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주세요.
- ② 인터뷰이 발언의 맥락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③ 최종 보도를 송고하기 이전에 해당 인터뷰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길 권장합니다.

### 나. 인터뷰 대상자별 유의사항

- ① 재난 피해자 인터뷰 시 피해자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인터뷰 시간이나 공간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지 살펴주세요. 재난 피해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② 재난 목격자 인터뷰 시 취재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꼼꼼하게 검증해주세요. 취재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취재원이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는지 점검해주세요.
- ③ 장애인 인터뷰 시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에 적합한 질문 방식과 촬영 방식을 검토해주세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언 기회 등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장애인에게 취재 시작 및 소요 시간을 미리 알려 귀가 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 ④ 난민 촬영 시 인터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을 자제해주세요 비공개를 전제로 동의를 받은 경우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주민·난민 인터뷰 시 통역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해주세요.



- ⑤ 아동·청소년 인터뷰 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의견을 왜곡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선택하여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⑥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합니다.
- ⑦ 성소수자 인터뷰 시 관련 기사가 결과적으로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주세요.

### 3. 기사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사생활 보호에 유의해주세요. 성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신원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직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나. 전문가나 취재원이 언급했더라도 불확실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다. 당사자 동의가 있는 취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4. 보도 이후 유의사항

- 가. 취재원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요구하지 말고, 수집된 정보는 보도 직후 폐기해주세요.
- 나.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 다. 보도 이후 신변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 라. 보도 이후 차별, 혐오,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언론사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 목 차



## I.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1. 재난 보도와 인권 .....	15
2. 감염병 보도와 인권 .....	25
3. 자살 보도와 인권 .....	30
4.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	36
5. 성평등 보도와 인권 .....	56
6. 장애 보도와 인권 .....	65
7. 정신질환 보도와 인권 .....	77
8. 이주민·난민 보도와 인권 .....	81
9. 노인 보도와 인권 .....	91
10. 아동·청소년 보도와 인권 .....	99
11. 성소수자 보도와 인권 .....	107
12.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와 인권 .....	112
13. 언론 보도 속 인격권 .....	116

## II. 부록

1. 인권보도준칙 .....	127
2. 재난보도준칙 .....	136
3. 감염병보도준칙 .....	145
4. 자살보도권고기준 3.0 .....	152
5. 성폭력 성희롱 사건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	158
6.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	169
7. 난민 보도 가이드라인 .....	172
8.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	179
9.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	183
10.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189
11.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223
12.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심의기준 .....	232
13. 신문윤리실천요강 .....	241
14. 언론윤리헌장 .....	251



# I.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 1. 재난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재난 보도가 준수해야 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보도준칙>(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4.9.17.개정),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가이드라인>(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11. 공동 제정) 등을 참고해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위의 규정 중 재난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재난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재난 생존자, 희생자, 유가족 등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2022년 11월 1일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고, 혐오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월 1일 보도자료에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음. 이전 참사와 비교할 때 방송사들이 뉴스 속보의 문제점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점은 중요한 성과임. 이처럼 언론 현업 단체들이 비교적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음.



- 사상자 명단 등을 공개할 때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 2022년 10·29참사 이후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발표회(2022.11.7.)에서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위원장은 “기존 언론은 재난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 유가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마치 해부하듯이 집요하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인들이 인터뷰를 청할 때에는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전국민적인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재난 무력감이 큰 2030세대는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였다고 말했다. 또한 “비난·혐오가 트라우마를 악화시킨다”, “공감·위로는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참사를 애도하고 그와 더불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런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함.

☹ 2017년 포항 지진 당시(2017.11.16.~17.) 여러 방송사가 대피소에서 쉬는 다수의 이재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됨. 대피소에서 잠을 자고, 식사하고, 누워 쉬는 이재민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송한 경우, 흐리게 처리했지만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어린이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 경우, 대피소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재민의 얼굴을 노출한 경우 등이 있음.<sup>1)</sup>

1) 비슷한 사례의 보도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제목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이하 동일)

2) 특정한 언론사의 보도 사례일 경우, 제목과 일자를 <제목>(보도년월일)로 표기했고, 보도 내용은 필요한 경우 “ ”로 인용 표기했습니다.(이하 동일)


 2018년 핑크돌핀호 좌초 당시, <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2018.3.25.)<sup>2)</sup>에서 재난 생존자의 귀환 장면을 보도하면서 당사자 얼굴을 공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미성년자는 개별 취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미성년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한 방송사에서 가족 중 혼자 구조된 6세 어린이를 근접 촬영하고 인터뷰를 시도함.(2014.4.16.)

- 재난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과잉 취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한 언론사가 <세월호 보험, 학생들은 ○○화재 보험, 여객선은 ○○○ 선박보험 가입>(2014.4.16.)이라고 보도함. 이후 다른 언론사도 세월호와 단원고의 보험 가입 여부를 다루는 보도를 게재함. 같은 날 한 방송사는 심야 뉴스에서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 따져보는 리포트를 함.


 <안산 단원고 숨진 고교생> (2014.4.16)은 사망한 학생의 책과 공책을 책상 위에 놓고 촬영하여 보도함



- 피해자와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가족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위원장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발표회(2022.11.3.)에서 10·29 참사 관련 취재 기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함. 해당 메시지에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화드렸던 ○○뉴스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태원 현장에 계셨던 분을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중략) 혹시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건드리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하게 될까 봐 질문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였음. 정 위원장은 재난이 벌어졌을 때, 언론인도 전문가와 논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함.

☺ 2022년 10·29 참사 당시, <혐오발전소, 댓글 창>(2022. 11.2.9.)은 “10.29~11.9까지 이태원 참사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 123만여 개 가운데 58.27%가 혐오 표현을 담고 있었다.”라고 보도함. 기사는 “댓글 속 혐오 종류를 보면 악플·욕설(51.12%) 비중이 가장 높았다. ‘희생자 조소’, ‘외국인 혐오’, ‘정부 지원금 반대’, ‘추모 지겨움 표현’ 등도 댓글에 드러나 있었다”라며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이 지면에 ‘댓글 담수성 자가 테스트’ 항목을 전면 배치하고 혐오 댓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클린 댓글 캠페인’을 펼침. 혐오 표현과 댓글의 문제를 지적함. 2023년 1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

- ⊘ 2022년 10·29 참사 당일, 방송사 뉴스특보에서 인터뷰 중이던 ‘현장 목격자’가 “내 친구를 직접 1시간 30분 동안 CPR 했다.”라고 말함. 인터뷰를 진행하던 현장 기자는 목격자가 희생자의 지인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친구분은 혹시 사망하신 건가요?”라고 되물음. 해당 언론사는 이후 방송내용을 삭제함.

## 나. 정확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재난 보도에서는 신속함보다 정확함이 더 중요합니다. 교차 검증을 거친 뒤 보도해주세요. 보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빠르게 정정해주세요.

- ⊘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많은 언론이 ‘전원 구조’ 오보를 냈음 (2014.4.16.). 오보 방송사는 총 8개 사로, 재난주관 방송사,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 등이 포함됨. 이 오보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 ⊘ 2016년 5월 18일 오후 5시 20분 경, “19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군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다.”라는 속보가 70여 건 보도되었음. 기상청 직원이 실수로 보낸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관련 팩스를 각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생긴 오보였음.



- 참사와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의견이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참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황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보도해주세요.

☹️ 10·29 참사 직후 많은 매체가 목격담, SNS상의 소문을 토대로 참사 원인이 ‘뒤에서 민 사람들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토끼 머리띠 한 남성’을 특정함.(2022.10.29.)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으며 당국의 부실 대응 및 안전 조치 미비 등 참사의 근본 원인과는 전혀 무관한 ‘소문’이었음. 그러나 <이태원 압사 비극, 어떻게 시작됐나…“밀어” 구호 나왔다>(2022.10.30.), <참사현장 곳곳 ‘밀치는 장면’ 포착… 경찰, CCTV 확인 등 수사 돌입>(2022.10.30.) <고의로 민 사람 있었을까… 경찰, 이태원 일대 CCTV 확보 분석>(2022.10.30.) 등 다수 언론에서 ‘뒤에서 민 사람들에 초점을 맞춤.

☹️ 2022년 10·29 참사 당시, 방송사 뉴스특보(2022.10.29.)에서 기자가 “목격자들은 유명인이 방문하면서 해당 주점을 찾아 갑자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새벽 2시 현장 제보자 인터뷰에서 “저희가 처음에 전달해 드리기로는 한 주점에 유명인이 와서 그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 현장 상황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함. 이후 다수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명인’이 누구인지 지목되고 지목된 유명인들은 이를 반박함.

## 다.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흥미 위주의 보도가 아닌지 심사숙고해주세요.

😊 2022년 10·29 참사 사흘째인 10월 31일, 주요 방송사들은 저녁 종합 뉴스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담은 영상 사용을 자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힘. 방송사들은 자극적 화면은 사용하지 않고, 특히 사상자가 노출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영상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함. 사고의 직접적 원인 등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음을 지우고 정지화면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힘. 비록 늦었지만, 뉴스 속보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임.

☹️ 2022년 10·29 참사 당시 다수 매체가 사고 전후 장면이 담긴 SNS 영상, 제보 영상을 노출함.(2022.10.29.) 영상 속에는 희생자에게 CPR을 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시신의 모습도 있었음. 이처럼 충격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들이 여과 없이 방송됨. <악몽된 이태원 ‘할러윈 주말 밤’…비명·울음 뒤엉켜 ‘아비규환’>, <현장 사상자 100명 이상… 이태원 도로 곳곳 수십구 주검 놓여> 등은 모자이크 처리 없는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가 뒤늦게 사진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함.

-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사고의 기사·영상·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 자료 화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참사 당시, <침몰 유람선 사진 공개…수중 상황은?>(2019.6.1.)에서 다뉴브강과 세월호 참사 당시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며 유속을 비교했음. 특히 이때 화면에 맹골수도의 세월호 침몰 장면과 다뉴브강의 유람선을 함께 비교해서 보여줌. 이는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컴퓨터그래픽스(CG)는 시청자에게 사안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사용해주세요.

☹️ 한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묵 시식 방송 장면을 방송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뉴스' 당시 뉴스 속보 장면을 배경으로 사용함. 침몰하는 세월호가 나오는 부분을 흐리게 처리한 화면이었음. (2018.5.5.)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어묵을 언급한 혐오 표현이 있었는데, 어묵이 나오는 장면에서 세월호 영상을 사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였음. 해당 방송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화면 삽입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발표함. 그러나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가족들을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방송심의 규정의 명예훼손, 윤리, 품격 유지 항목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최고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

## 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편견, 혐오 표현이 등장합니다. 재난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 특정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022년 10·29 참사 당시, 일부 매체가 외신을 오역한 채 인용하여 마치 참사의 원인이 ‘헬러윈을 변질시킨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함. <WSJ “아이들이 사탕 얻는 헬러윈, 한국선 클럽 가는 날 됐다”>(2022.10.30.)에서 “한국 내 헬러윈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 시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벌어진 참사를 자세히 전한 뒤 “한국에서 헬러윈은 아이들이 사탕을 얻으러 가는 날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20대를 중심으로 코스튬을 차려입고 클럽에 가는 행사로 정착됐다”라고 전했다.”라고 보도함. 이처럼 한국 헬러윈 문화를 2줄 정도로 언급한 것일뿐, ‘변질됐다’거나 한국 문화를 ‘꼬집은’ 표현은 없었음에도 여러 언론이 ‘한국에서 헬러윈이 변질했다’라며 해당 외신을 인용 보도함.

- 언론은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나는 재난 생존자입니다... 재난 이후 멈춰버린 시간> (2021.6.25.)에서는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자들의 재난 이후 삶을 취재하여 그들이 겪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과 재난 트라우마를 조망했음. 이처럼 재난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삶을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바람직함.



😊 2022년 10·29 참사 당시, <“이 와중에” 하루에 무려 30만 개 달린 이태원 ‘댓글’, 왜 이러나>(2022.10.30.)는 “참사 다음 날 뉴스 댓글 수는 3배 이상 폭증했다. 작성자의 약 40%가 40·50대 남성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댓글도 많지만, 특정 세대를 비난하는 듯한 2차 가해성 댓글도 상당수였다”라고 보도함. 이처럼 무분별한 댓글과 혐오 표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빠르게 사안을 취재해서 대책을 촉구한 것은 바람직한 보도였음.



## 2. 감염병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준수해야 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2020.4.28. 공동 제정)을 참고해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위의 규정 중 감염병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감염병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주세요.

-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해주세요.

😊 <팩트체크K/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팩트체크 연속 보도>(2021.8.12.~11.15)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명적 허위 정보를 치밀한 취재로 적시에 보도해 생명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했고 특히 독자적으로 원문 정보를 발굴했음. 이 보도는, 2022년 3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가 공동제정한 '한국팩트체크대상'에 선정됨.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일련의 팩트체크 기사>(2021.3.3.~10.7.)와 <팩트맨/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 팩트체크 연속 보도>(2021.2.2.~6.7.) 등도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가 돋보여서 우수상을 받음.



☺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코로나 19 최전선의 기록>(2020. 4.11.)는 2020년 3월 한 달간 경북대병원 의료진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진이 위험을 감수했음. 코로나19 의료체제와 치료 과정 등에 대한 불안이 팽배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전선 의료진의 노고를 그대로 살린 보도는 사실 전달 이상의 의미를 줌. 이 보도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함.

-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美CDC(질병통제예방센터) “원숭이두창 동성간 성접촉으로 확산”>(2022.5.24.)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 성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게 유력한 가설”이라 보도함.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확산 초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브리핑 중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환자들은 자신을 게이 또는 양성애자 남성이라 밝혔다”라는 대목이 있었을 뿐인데, 이를 ‘동성 간 성접촉 확산’으로 보도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 경로를 사실처럼 인식하게 함.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해당 브리핑에는 동성간 성접촉을 확산 경로로 특정한 내용이 없었으며 오히려 “체액, 염증 또는 호흡기 비말 접촉으로 원숭이두창을 퍼뜨릴 수 있다.”라며 언론과 당국에 ‘낙인에 유의하라’는 당부까지 하였으나 다수 국내 언론이 이를 생략함.

- 감염병 발생은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해주세요.

## 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패닉, 대혼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 메르스 감염병 당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2015.5.20.)과 유사한 제목으로 메르스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여 보도함.

## 다. 감염인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주세요.
- 감염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주세요.

## 라.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주장이 등장할 때, 인권 측면에서 면밀히 살피고 보도해주세요.

- 감염병이 생기면, 그 원인을 다른 집단에 돌려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2020년 5월 이태원의 한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2020.5.7.)에서 해당 업소가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함. 이외에도 다수 언론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연령, 주거지, 직장 등 특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드러내 사생활을 침해했음. ‘게이클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한편, 2022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였던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 과정에서 기사 제목에도 ‘블랙수면방’, ‘게이전용 시설’, ‘찜질방’ 등 방역 목적과 무관하게 성 소수자 집단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해 소수자 집단을 향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되도록 했음.

- 용어 사용에 신중해주시고 감염병 명명 원칙을 지켜주세요.

○ 2015년 WHO에서는 새로운 병명과 병의 원인체에 대한 명명 원칙을 새로 수립함. WHO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병의 명명은 특정 질병의 이름이 특정 종교, 민족 공동체의 반발을 일으키고, 여행, 산업 및 무역에 대한 장벽과 식용 동물의 불필요한 도살을 유도해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고했음. 따라서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또는 음식의 종, 문화, 인구, 산업 또는 직업 등을 질병 이름에서 피해야 할 용어라고 언급했고, 과도한 공포를 유도하는 단어도 배제하기로 했음. 코로나19 발병 초기 대다수 언론이 ‘우한폐렴’으로 명명했으나, 2020년 1월 27일 감염증의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 밝히고, 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한글 표현을 ‘코로나19’로 명명했음. 이는 WHO의 2015년 개정된 새로운 인간 감염성 질환 명명법에 따른 것임.

- 특정 국가나 민족, 지역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코로나19 감염병 당시 <단독 ‘중국인 의료비’에 건보료 연 5천억, 우한폐렴 들끓는데...>(2020.1.30.)에서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천억 원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중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상황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치료 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순 관광 방문뿐 아니라 치료 목적 방문이기에 방역·검역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함. 이는 재중 교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킨 사례임.

☹️ <“대구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지역혐오>(2020. 5.1.)는 지역혐오 현상을 짚어주는 보도였음. 그러나 온라인상의 지역혐오 발언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주었고 그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취재 의도와는 달리 지역혐오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었음.



### 3. 자살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는 자살 보도 시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살 보도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18.7.31. 공동개정)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살사건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자살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자살 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표현을 참고해주세요.

기존 표현	대안 표현	권고 사유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다, 극단적 선택	사망하다 숨졌다.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함.
목매 숨져, 목매사, 투신 사망,		자살 방식이나 도구 등을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
동반자살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동반자살을 사용하지 않기 권함.
연이은 자살, 또 자살, 자살 전염		자살이 유행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를 권함.

**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거나, 자살 도구·장소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공부 감시 부친 보는 앞에서... 28층서 투신한 명문고생>(2022.4.4.)에서 고인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유서 내용도 상세히 담았음. 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경고' 조치

☹ <'○○ 일가족 실종 사건' ○○ 부모 '루나 코인' 검색>(2022.6.29.), <○○ 부모, 1억대 금융 채무...포털서 '추락' '물때'도>(2022.6.30.) 등 다수 보도에서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자살자 발언과 자살 경위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살 보도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

**다.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다룬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라.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 ○○○ 전 회장 “결백 밝히기 위해 자살하겠다” 자원외교 비리는 무엇?>(2015.4.9.), <○○○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수치와 명예’>(2018.8.7.), <영화 리뷰 ‘노리개’ 자살 여배우의 절규, 사회 부조리 고발하다>(2013.4.15.) 등의 제목은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음.



## 마.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발생합니다. 자살 동기를 예단하여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2022년 ○○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보도에서 <○○○ 아빠, 가상화폐 투자로 2000만 원 손해봤다>(2022.7.1), <‘코인 투자’가 비극 불렀나… 결국 돌아오지 못한 ○○○양>(2022.7.1) 등의 보도에서 고인이 ‘루나 코인’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자살 동기로 단정하는 보도가 다수 있었음.

## 바. 목격자 인터뷰나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 시장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여 수색 끝에 발견한 상황에서 여러 방송사를 통해 ‘경찰 브리핑’이 생중계(2017.7.10.)되었는데, 당시 기자들이 “사안을 좀 더 조사하셔야 하겠지만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휴대폰 하고 소지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나요? 소지품 말고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나요?” 등의 질문을 함. 경찰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면서 사망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음.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생중계 방송에서 일부 언론인이 이처럼 질문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2) 고인과 유가족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가. 고인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마세요.

☹️ ○○ 일가족이 실종된 당시 <극단적 선택 의심 정황 ‘속속’...의혹 속 진실은>(2022.6.28.) 등의 보도에서 “○○의 부모는 수개월 전 컴퓨터 관련 사업체를 폐업한 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나 운영 중인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집에 수천만 원의 카드빚 독촉을 안내하는 법원 특별우편 송달 딱지가 붙어 있는 등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의 어머니도 최근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함. 아직 사건의 경위가 정확히 ‘극단적 선택’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종자들의 직업과 경제 상황까지 모두 노출한 사례임. 개인정보는 사건의 진상과 결정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를 자제해야 함.

### 나. 유서와 관련한 사항의 보도는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주세요.

☹️ 개그맨 ○○○ 사망 당시,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고인의 병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어머니 유서 내용을 공개함.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보도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 보도와 인권존중-자살 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



#### 다. 유가족의 심리 상태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보도해주세요.

☺ <“나는 자살생존자입니다”>(2020.11.21.), <“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극단 선택 후 남겨진 그들 이야기[밀실]>(2021.9.8.) 등은 자살 생존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 자살생존자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살자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자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음. 이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도는 결과적으로 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임.

☹ 정치인 ○○○ 사망 당시 <충격에 빠진 ○○○ 투신 아파트 주민들...“심폐소생술 3-4분 하다 천 덮어”>(2018.7.23.)에서 “인공호흡을 3-4분 시도하다 소생 기미가 안 보이니 무슨 비닐 같은 거로 덮고 나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쳤다”, “어떤 남자가 현관 앞에 얼굴을 땅 쪽으로 대고, 대자로 누워 있었다” 등 주민들의 목격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음.

## 라.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보도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필요하게 고인들이 살던 자택을 사진과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자택 주소는 물론, 고인들의 ‘직업 유무’까지 거론했음. <자택 곳곳 세 모녀 ‘고통’ 흔적이…“규정 아닌 이웃 관심 절실”>(2022.8.23.)에서 “매캐한 썩은 내에 두 다리의 힘이 갑자기 풀렸다. 가까스로 낡은 적벽돌 연립주택의 1층에 들어서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방과 거실 곳곳에는 비닐봉지와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널브러진 상태였다” “세 모녀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함.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 고인들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사진과 함께 ‘널브러진 상태’ ‘매캐한 냄새’ 등의 상세한 묘사는 적절치 않았음.

## 마. 사망을 둘러싼 유언비어를 정확한 근거 없이 보도하지 마세요.

- ⊗ <타살설로 시끌>(2018.7.28.)에서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이 ○○○ 의혹을 숨기려고 ○ 의원이 희생당했다며 타살설을 주장했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외쳤다”라고 보도함. 객관적 근거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이 정치적 의혹을 숨기기 위해 타살당했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경고’ 조치



## 4.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범죄 보도가 준수해야 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보도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12.12. 공동 제정)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수첩>(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동제작)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범죄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사건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sup>3)</sup>,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단정적 표현에 주의해주세요.**

☹ <학폭 인정> ○○ SNS글에 “성폭행 당한 여자 남편이다” 댓글>(2021.3.5.)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배우 ○○와 관련해서 또 다른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온라인 댓글이 올라오자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댓글 내용을 기사화했음. 이후 댓글 작성자가 댓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해당 언론사는 기사 수정이나 삭제를 하지 않았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위반으로 경고 조치

3)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원칙

##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 <텍사스 한인 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2018.5.9.)  
은 해외 거주 한인 부부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  
자인 아내의 이름·얼굴·나이·직장·이력 등을 공개했음. 이에 언론중재  
위원회는 시정권고 조치

##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 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된 후에도...“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2018.3.27.)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했음. 사진은 모자이크로 처리했지만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조치

- ☹ <김○○ 성추행 추가 폭로, 가수 이○○?...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  
까지?>(2020.1.20.)는 연예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의 과거 인스  
타그램 사진을 공개했음.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 2020년 4월 13일 N번방 사건 당시, <단독!○○○ 폰엔, 여성 000 2명  
‘충성 사진’ 있었다>, <○○○ 폰엔 ‘특정 손가락 포즈’ 0000들 사진  
있었다> 등에서 보도 제목과 내용에 SNS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피해  
자의 직업을 명시하고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해자 휴대전화 속  
사진의 피해자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음.



## 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감방 동기가 본 ‘68세’ ○○○ “1시간 푸시업 1000개에 자위 행위”... ‘성욕 과잉’ 우려도>(2020.12.6.)는 ○○○의 출소가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나, 성범죄자의 교도소 내 이상행동을 ‘자위행위’라는 구체적 표현까지 제목에 올리며 보도할 당위성은 없음. 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및 제4항 선정보도의 금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

## 마.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대학교 총장인 피의자가 같은 대학 소속 교수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대학총장이 같은 학교 여교수와 ‘연인’ 사이?>(2014.8.11.)는 “애인 사이”라거나 “연인 사이이기에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도 같이 잤다”라는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보도함. 이에 법원에서 30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용됨.

## 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묘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배우 조○○ 카톡, 본인 성기 사진까지 보내? “그 긴 혀로 어찌해줘” 경악스러운 ‘성집착’>(2018.2.28.)에서 유명 배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함. 특히 특정 신체 부위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동성 성폭행 피해 미군들 “우린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2020.7.3.)에서 독일 주재 미군 부대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보도하면서 범행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함. 특히 지나치게 가혹한 성폭행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권○○, 112신고 “김○○ 향해 네 XX 곱게 갈아서 먹여주겠다” 잔인한 협박 때문에…>(2020.8.24.)는 유명 가수에 대한 안티팬들의 협박 사건을 보도함. 그러나 블로그에 올라온 협박 글을 캡처해서 상세히 게재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사. 범죄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고 표현해주세요.

☹️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에 딸 사진이…미국판 ○○○ 사건 다룬 넷플릭스>(2022.8.26.), <‘리벤지 포르노 vs 배신’,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도 되나?>(2022.8.3.), <○○○, ○○○과 갈등 폭발…“사기 결혼·포르노 리벤지 다 겪었다” (2022.8.2.) 등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을 다수 언론이 사용함.

- ‘몰래카메라’, ‘몰카’라는 표현은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불법 촬영’으로 해주세요.

☹️ <○○○ 몰카 본 ○○○ “단톡방 멤버는 아니었다, 잘못된 대화 반성”>(2022.11.10.)은 제목에서도 ‘몰카’라고 표현했고, 내용에서도 “가수 ○○○이 직접 촬영한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본 가운데”라고 보도했음. 해당 영상은 ‘여성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이며, 수면제 등 약물을 사용하여 무의식 상태의 여성을 강간한 명백한 불법 촬영물임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몰카’라고 표현

-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나쁜 손’, ‘몹쓸 짓’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성희롱, 성추행 등의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11년 동안 여학원생들에 나쁜손·몹쓸짓...50대 학원장 “합의했다”> (2022.6.15.)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10년 넘게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학원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나쁜손·몹쓸짓’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 해당 사건은 9세 아동의 신체를 반복해 만지다가 14세 이후 성폭행을 했으며, 이 피해자의 동생까지 14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임. 이와 같은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 나쁜 손 · 몹쓸 짓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음.

## 아. 되도록 사건 피해자를 주체로 한 사건명을 쓰지 말아주세요.

☹ <○○○·○○○ 사건 조사한 과거사위 다시 수면 위로>(2021.8.25.) <‘○○○ 사건에 놀란 가슴...’ 심야영업 적발 엔터사 연습실의 정체>(2021.4.2.) <○○○, ○○○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도>(2019.1.31.) <○○○ 장관, ○○○ 검사 성추행 사건에 언급되는 이유?...통영지청에 응원의 ‘METOO’ 카드 이어져>(2018.2.1.) 등 성범죄를 명명할 때 피해자 이름을 주체로 하는 경우가 많음.



**자. 범죄 내용을 보도하면서 차별적 표현, 비하 표현, 선정적 표현에 유의해주세요.**

☹ <“○○○ 장애인 xx 간호해봤자...” ○○에 악플 쓴 20대 검찰 송치>  
(2021.1.29.)는 방송인 ○○ 씨에게 남편인 가수 ○○○ 씨의 장애를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장애인 비하 표현인 ‘애자’를 사용하고, 2차 가해가 명백한 글을 그대로 기사에 사용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④항(선정보도의 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

## 2) 성폭력·성희롱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음을 유념해주세요.

☺ <기성세대 성문화가 교실서 일상화...“n번방” 이미 학교에 있었다> (2020.4.13.)은 ‘N번방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다각적으로 정리한 좋은 보도였음. 보도는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기성세대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비행 청소년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10대 남성의 성범죄는 왕성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수’로 여기고, 10대 여성의 ‘일탈’을 ‘문란함’으로 비난하는 풍토는 기성세대의 유산이고, 이런 교육과 문화가 N번방 사건을 낳았다”, “순진무구함, 순결함,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딸 같아서’. 여성 청소년한테 늘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행 청소년’이 되죠” (중략) 우리 사회가 여성 청소년에게 지우는 ‘순결’과 ‘성적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이미지는 여성 청소년이 협박을 당하고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등 뿌리 깊은 유교적, 가부장적 성 인식, 훈육 집단으로 전락한 가정환경, 성교육의 부족 등의 문제를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로 전달했음.



## 나. 성폭력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며 선정적 표현에 주의해주세요.

☹ <“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2018.5.17.)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 피해자를 다뤘음. 성폭력 과정에 대한 선정적, 구체적 묘사에 치중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10분이면 구입 가능” 논란의 ○○(○○○) 유통실태 추적>(2019. 2.8.)은 성폭력에 악용되는 약물의 유통과정, 입수 과정, 효과 등을 상세히 보도함. 특히 “색과 향이 없어 술이나 음료에 섞어도 티가 나지 않고 무엇보다 약 성분이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거나,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기절하게 만들어 기억도 못 한다”, “여성이 복용하면 기분이 업되고 성욕이 매우 높아져 약발에 취해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애교 떠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모방범죄 우려가 있음. 성폭력 범죄가 지닌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여과 없이 노출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다. 성폭력 원인을 가해자의 정신질환이나 성욕, 여성과의 접촉 등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 <○○○ “성추행 죄의식을 가지면서 욕망 억제 못해”>(2018.2.19.)는 “어떨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라는 가해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음. 또한, 제목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넣어 부각함.

## 라. 가해자 이야기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말아주세요.

- ☹ 문화계 인사 ○○○의 성폭력을 보도하면서 <결국 고개 숙인 ○○○... “성폭행은 인정 못해”>(2018.2.19.) <○○○ 공개 사과... 성폭행 의혹엔 “강제 아니었다” 부인>, <“추행 맞지만 성폭행 아니다”>(2018.2.19.) 등 가해자 주장을 따옴표로 제목에 인용했으며, 보도 내용에서도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적시했음.
- ☹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네”...○○경찰서 ‘집단 성희롱’ 16명 연루>(2021.6.22)는 ○○○경찰서에서 집단으로 이뤄진 신입 여성 경찰관 성희롱 사건을 다뤘음. 그러나 “음란하게 생겼네”, “가슴 들이밀어라”와 같은 가해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제목에도 명시했음. 명예·신용 훼손 금지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



#### 마.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지 마세요.
- 특히 기사 내용 중에서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의 주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정보의 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016년 섬마을 교사 성폭력 사건 당시 여러 언론이 범죄가 발생한 관사를 그대로 촬영했음. 방송사는 리포트를 하면서 관사를 보여줬으며, 신문사도 관사를 촬영한 뒤 확대해서 노출했음. 관사 인근 거리까지 촬영해 피해자가 재직할 학교는 쉽게 특정되었음. 심지어 이런 정보를 토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가 지목되었음. 그러나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의 동료 교사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음. 해당 학교는 매우 작은 섬이어서 관사 노출만으로도 학교가 특정된 것임.

-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것과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아닙니다.

⊗ 정치인 ○○○ 성폭력 사건 공판 당시, 언론은 재판에서 나온 사적 자료를 그대로 보도했음. 2018년 7월 3일은 피해자 ○○○ 씨의 의료기록을 언급하며, 누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음. <○○○ 첫 재판…○○○이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엔>, <○○○ 첫 재판, 검찰과 ○○○ 측 산부인과 진단서 증거로 제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 ○○○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 등 다수 언론이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해 보도함. 개인의 진료기록은 사생활 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피해자가 재판을 위해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또는 재판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언론이 그 내용을 임의로 보도해도 되는 건 아님. 언론이 이를 보도할 때에는 ‘○○○ 씨가 성폭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병원 기록’ 정도로 표현하면 될 사안이었음.



-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하면 안 됩니다.

☹ 2012년 성폭행범 ○○○이 나주 초등생을 성폭력 한 사건 당시, 일부 언론은 ▲마치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왜곡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집안 내부를 불법 촬영해 보도 ▲병원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해 아동에게 상의를 올려보라 한 뒤 상처 부위를 찍어 피해자의 눈·코·입이 가려진 채 얼굴 전체에 든 시퍼런 멍, 파랗게 질린 입술, 눈가의 구타 흔적, 배, 허벅지, 옆구리 등 온몸이 드러난 사진 10여 장을 보도 ▲피해자 집 위치, 가족의 월 수입,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독서록, 노트, 그림일기까지 공개함. 이에 피해자 가족은 2013년 7월 5개 언론사에 총 4억9,200만 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2014년 총 1억2,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함.

**바. 피해자의 복장, 음주 여부, 성격, 평판, 성적 지향 등을 언급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피해자다움이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할 것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말합니다. “왜 더 저항하지 못했나?”,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나?”, “피해를 보고도 어떻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나?” 등의 시각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오빠 없으면 난 약(弱)○○” ○○○이 공개한 ○○○·○○○ 문자 어땠길래>(2019.2.21.)는 ○○○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다루며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임. 가해자 주장을 상세하게 여과 없이 보도했음.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사.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방송사 시사 토크 프로그램(2018.6.25.)에서 여성 청소년 살인사건을 다루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했음. 특히 피해자가 '원조교제'나 '몸캠', '야외 누드사진'에 합의하고 따라나섰을 가능성을 거론하여 강력범죄의 책임이 피해자에 있을 수 있다고 예단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 주의 조치



## 아.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에 유의합니다.

- ☹️ <○○○, ‘좋아서 붙어먹고’ 올림픽 응원하는 마음까지 ‘뿔났다’... 일본은 ‘육상계 패닉’으로>(2019.1.14.)에서 네티즌들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난 댓글을 인용 보도함. 이는 미투 폭로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 <“X녀, 걸X, 잘 봤다 네 XX”...○○○ ‘유출 사진’ 보고 조롱한 누리꾼들>(2018.5.17.)은 유튜브의 미투 사건을 보도했음. 그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피해자를 향한 혐오 표현을 여과 없이 인용하며 제목으로까지 부각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자. 구체적 근거 없이 성폭력 피해자가 ‘가짜 미투’를 했을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 <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2019.1.25.)은 일명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이 많으며, 이들이 이를 통해서 부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함. 특히 “A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합의금만 무려 3억 원을 날린 적도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다. (중략) 만 18세 미성년일수록 합의금은 높아 로또 사는 것보다는 남성들을 유혹 성폭력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낫다는 평이 나돌고 있다. (중략) 로또보다 더 좋은 수입은 성폭력으로 남성들을 유도하며 합의금 뜯어내는 신종 수법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등의 사례를 보도했음. 이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고 미투 폭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윤리 위반, 차별금지 위반 등으로 시정권고 조치

### 3) 성매매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세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도해주세요.
- 성매매 피해 여성, 성착취 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사업 등에 대해 부적절한 여론을 단순 중계하는 보도를 지양해주세요.

☹ <성매매 여성에 2천만원대 지원...철거 앞둔 '엘로우 하우스' 형평성 논란>(2019.1.8.)은 성매매 여성 재활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다룬 보도임. 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불법으로 성매매한 여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함. 특히 "열심히 노력해도 학자금에 허덕이는 청년들이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 성매매 여성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큰돈을 지원받는다니 이해할 수 없다", "정당한 노력과 희생을 강요받고 살아온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는 등의 비판을 그대로 보도함. 오랜 기간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방조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은폐한 채 개발 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터부시하고 매도한 여론을 불필요하게 인용한 것임. 일부 반론을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성매매 여성 쫓아내면 여성들은 어디에 가서 사나?', '다른 지역에 가서 성매매하라고 할 순 없지 않나?' 등 수세적 발언만 인용하여 성매매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근본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한 보도였음.



**나.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기존 표현	대안 표현	권고 사유
고객, 손님	성구매자, 성구매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손님’은 성을 구매하는 자를 높여 부르는 것이며, 성구매 행위를 인정하고 여성의 성상품화를 옹호하는 용어임. 성매매 업소에서 실제 사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사회적인 용례를 비판할 때는 ‘고객’, ‘손님’ 등 작은따옴표를 붙여 표기하는 것이 적절함.</li> </ul>
사창가, 홍등가 집창촌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창가’는 ‘사창들이 많이 모여서 밀매음하는 거리’라는 의미로, 일제 강점기에 공창제가 도입되던 당시 관의 허가 없이 성매매가 이뤄지던 곳을 일컫는 용어임.</li> <li>- ‘홍등가는 과거 중국에서 붉은 등을 켜고 성매매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린 것에서 유래된 표현임.</li> <li>- ‘사창가’, ‘홍등가’, ‘집창촌’은 성매매 집결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성매매업소’나 ‘성매매 집결지’로 표현하기를 권함.</li> </ul>
윤락, 매춘, 매매춘, 성매매춘,	성구매, 성매매, 성착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락(淪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져 여성의 성 도덕적 규범만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용어임.</li> <li>-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성매매춘’ 등에서 사용되는 춘(春)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봄에 비유한 것으로 성매매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매매를 낭만화하는 용어임.</li> <li>- 행위의 본질에 걸맞게 ‘성구매’ ‘성매매’로 표현하거나, 더 나아가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를 가진 ‘성착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하기를 권함.</li> </ul>

기존 표현	대안 표현	권고 사유
창녀, 윤락녀, 매춘부, 꽃뱅, 성매매 종사자, 여종업원, 원정녀	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해외 성매매 여성	- '창녀'는 성매매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윤락녀'는 성매매의 원인이 여성의 도덕적 타락에 있다고 보는 성차별적 용어, '매춘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봄에 비유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을 물화·대상화하는 표현, '꽃뱅'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성매매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관점을 강조한 표현, '성매매 종사자', '여종업원'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사회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임.
원조교제, 조건만남,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착취	- 원조교제, 조건만남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지칭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청소년이 합리적인 조건을 제공받고 성매매에 응했다는 인식을 하게 해 부적절한 표현임.
성매매 청소년	성착취 피해 청소년	- 따라서 '청소년 성착취'라고 표현하기 바람. 성착취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로 성착취 피해 청소년으로 표현하기 바람.



## 다. 성매매를 흥미 위주로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요즘 유행하는 ‘립카페’ 알고 보니...>(2018.5.30.)는 신종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면서, 서비스 내용과 행위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불법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담지 않았음. “주머니 사정이 시원치 않은 남자나 시간이 없는 남자들도 립카페는 들락거리기 딱 좋다. 자동 안마기기도 있어 안마와 커피, 그리고 여성이 입으로 해주는 ○○○○까지 3종 세트다.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이 낮에 잠깐 들러 후딱 즐기기에 더할 수 없이 좋다. (중략) 아내들이여, 테크닉을 전수 받으러 립카페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보도함.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등 매우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기사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성매매 적발 건을 보도하면서 돈이 오가는 거래로 묘사하는 삽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마사지 업소 가장 유사성행위 알선 30대 업주 실형>(2021.10.20.), <오피스텔 120개 빌려 기업형 성매매...성매수 1만명 ‘벌벌’>(2021.10.7.), <‘성매매 업소 대기실, 신체 마사지’...19금 영상 난무하는 유튜브 쇼츠>(2021.10.13.) 등은 선정적 삽화, 성매매가 이뤄진 방의 내부 구조, 유튜브에 올라온 여성의 노출 사진 등 부적절한 시각 자료를 내보냈음.

## 라. 언론은 성매매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 방송의 시사토크 프로그램(2016.6.15.)에서 2016년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피소 건을 보도하면서 익명 종업원의 “성폭행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성폭행은 소리만 질러도 화장실을 저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저희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발언을 반복해서 전함. 이는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성매매’이지 ‘성폭행이 아닐 것’이라는 메시지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며, 성폭행을 고발한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5. 성평등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성평등을 위해서 언론이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평등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성평등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신문보도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2021.7.12.~8.16.)는 치안·산재·채용·출산 등 여러 데이터에서 성별을 분리하지 않아 여성의 현실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다룸. 산재 관련 법제도정책에서 여성 노동의 누락을 지적하기도 했음. 해당 보도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했으며, 법과 제도 영역에서 어디서부터 개선할 것인지 짚어볼 수 있게 해주었음. 이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양성평등 미디어상 보도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함.

☺ 공군 ○○○ 중사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은 2021년 모 방송사의 단독보도로 국민에게 알려졌음. 해당 방송사는 보도윤리를 지키면서, 군 수사상의 축소 은폐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완결성 있는 보도를 했음. 보도 이후, 국방부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전면적인 재수사를 했으며, 공군 참모총장 사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음.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해당 방송사뿐 아니라 다양한 신문사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재했으며 방송사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가능했음. 해당 보도는 2021년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양성평등 미디어상 대상, 노근리 평화상 등을 수상함.

### **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 구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을 한정된 성차별적 접두사(여검사, 여교수, 여경, 여류작가, 여류화가 등)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도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해주세요.

### **다. 특정 성을 희화화, 조롱, 모욕, 멸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특정 성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는 김치녀, 된장녀, 맘충, 한남충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 사건·사고의 특징과 성별을 합성한 표현(토막살인녀, 트렁크녀, 대장내시경녀)는 매우 부적절하며 인권침해적 표현이니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폄하하고 멸시하는 의도가 담긴 김여사, 솔뚜껑 운전사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라. 성 역할을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8.10.9.)에서 재벌가 남성과 결혼한 여성 아나운서 사례를 나열하며 특정 성별과 직군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음. 특히 “아나운서가 재벌가 머느릿감 1순위”, “아나운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발언하여 여성 아나운서의 가치를 재벌가와 의 결혼 여부로 평가하고 해당 직업군의 전문성을 폄훼, 성차별적 관점을 드러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

☹️ 라디오 방송(2017.9.13.)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야구선수의 결혼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 진행자가 “○○○ ○○선수도 ○○○○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선수도 ○○○ 슈퍼모델 출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돈을 따라간 거예요, 남자의 능력을 따라간 거예요, 뭐예요?”, “○○○ 이분은 또 훌륭한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스포츠 선수들이 미녀들과 결혼, 미녀라 그럴까요? 뭐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마음이 예뻐야지” 등의 발언을 함. 유명 운동선수와 결혼한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며 ‘외모를 이용해 돈을 따라 결혼한 인물’로 묘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여성 일반에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것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항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

## 마. 가부장제를 우리 고유의 미덕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 ⊘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동산 매입을 결정했다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 발언을 보도한 <○○○ 대변인 누구>(2019. 3. 29.)는 기사의 소제목으로 <○○○ 마지막까지 남의 탓, 아내 혼자서 내린 결정 ... 참 나쁜 여자 돈에 눈이 어두워 ○○○ 대변인 남편 인생을 망친 셈>이라고 적시함. 보도 내용에서도 “돈에 눈이 어두워 ○○○ 대변인 남편의 인생을 망친 꼴이 됐다.”고 표현. 이는 가부장제도 내 부부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여 행위를 평가한 사례라 할 수 있음.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바.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 <명품 몸매는 셀프 공개! 시선 강탈 비키니 여왕>(2019.7.31.)은 여성 연예인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음. “여름, 여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바닷가 비키니 사진 공개...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굶고 땀내는 스타들이 있는데요.”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여성의 신체를 선정적 이미지로 처리해 여성은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적 제재인 ‘주의’ 조치



☹️ 라디오 방송(2019.8.14.)에서 “(특정 여성 가수에 대해) “하체 예쁜 가수. 하체가 단단한 가수”, “또 퍼포먼스가 좋고. 몸매가 남성들의 굉장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저도 이걸 아직 제가 허벅지를 톡 찢러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쿠션이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제가 꼭 한 번쯤은 접촉을 한 번 해보고. 이게 미투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라고 발언.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한 것은 물론이고, ‘여성에게 미투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신체 접촉을 해보겠다’는 등 사실상 방송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례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조치

## 사. 성차별 시정 조치를 역차별로 매도하거나, 근거 없이 폄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9.2.19.)에서 해당 안내서 내용에 따라 출연자 성비를 맞추다며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쓴 채 양손으로 가발을 쓸어 넘겼음. 함께 출연한 여성 기자 역시 긴 가발을 쓴 남성 기자를 보며 웃고, 가발을 쓴 남성 기자의 가슴에는 CG 이미지로 분홍색 리본을 표기했음.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이미지, 고정관념을 적극적 행위와 장치로 표출한 것이며, 특정 성별을 희화화했다고 지적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

## 아.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성매매'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빌미를 주었다거나, 원인 제공을 했다거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육군 소령, 10대 여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만남 거부하자 협박>(2019. 7.31.), <'10대 여학생 성매매' 현역 육군 소령 체포>(2019.7.31.) 등의 보도에서 육군 간부의 청소년 성 착취를 “돈 주고 성관계”한 것으로 치부함. 해당 보도는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 했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청소년 성착취의 심각성과 범죄 사실을 축소함.

☹ <사이버·모바일 상에 번지는 '사이버꽃뱀'>(2021.4.4.)에서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고교생 꽃뱀까지 생겨나고 있다. 등록금이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란다. 젊은 꽃뱀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남자를 유혹해 돈을 뜯어낸다. 이제는 꽃인지 꽃뱀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 됐다.”고 보도했음. 여성이 일방적으로 ‘꽃뱀’ 행위를 했다는 식의 표현은 부적절함.



## 2) 성평등 취재 시 유의사항

### 가. 언론사는 기자, 방송 진행자, 출연자, 취재원, 토론자, 칼럼 참여자 등의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한겨레>가 2월 1~5일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등 5개 일간지 종합면에 실린 보도사진 속 주요 등장 인물(군중 사진 제외)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보도사진 325장 가운데 여성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진은 49장(15%)에 그침. 언론사별로는 <경향신문> 27.9%, <한겨레> 23.6%, <중앙일보> 17.5%, <조선일보> 11.6%, <한국경제> 11.4%

○ 서울YWCA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20년 9월1일~21일까지 방영한 지상파·중편·tvN의 22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성은 21.3%(71명)인데 비해, 남성은 78.7%(262명)으로 3배 많았음. 진행자 성비는 남성 75%(24명), 여성 25%(8명)

### 나. 사건·사고 발생 시, 혐오 범죄가 아닌지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저지른 사건'이므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경찰 발표 등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이 있었음.

## 다. SNS 등의 성차별·혐오 주장에 대한 보도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칫 소수의 주장이 과잉 대표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백래시 분위기 속에서 특정한 손가락 모양이 페미니즘의 상징이라며 상업용 광고 및 관공서 등의 홍보 이미지 속에서 엄지와 검지로 물건을 잡는 모양을 찾아내서 억지 논란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태가 불거짐. 이 논란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이 사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기보다는 혐오성 주장을 전하는데 방점이 찍혀있었음. <“저 손모양 뭐냐” ○○○ 포스터에 ‘이대남’ 발끈한 이유>(2021.5.2)는 ○○○ 측의 사과 소식을 전했는데, 제목에도 이대남이 발끈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표현함. <‘○○○ 사장에게 문자도 보냈는데...’ ○○○○ 논란 후속 조치는?>(2021.5.10.)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서 보도했는데, 여기엔 “당신이 메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 처음에 메갈 논란이 생겨난 건 소비자가 아니라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당신이 메갈이 아님을 증명하세요” 등의 주장이 담겼음.

⊘ <“펜스룰이 최고”...‘반감’ 커지는 20대男, 왜?>(2019.7.22)는 20대에서 격심해진 젠더 갈등을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임. 그러나 ‘펜스룰에 대한 찬성 발언’을 지나치게 많은 케이스로 자세하게 인용하여 ‘펜스룰’을 논쟁의 가치가 충분한 공론의 대상으로 묘사했음.



☹️ 2021년 코로나19 안센 백신을 예비역 대상으로 접종하자 <“안센 여 먼저 맞으면 나라 뒤집히냐” 여초서 남녀차별 논란>(2021.6.1.), <‘건장한 남자들이 왜 먼저냐... 일각서 안센 접종 ‘남녀 차별’ 불만>(2021.6.1.), <“안센 접종 ‘남녀 차별 불만...”여자가 먼저 맞으면 나라가 뒤집혔겠지>(2021.6.1) 등의 보도에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것이 ‘남녀 차별’이라고 반발한다고 보도했음. 특히 일부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이 ‘많았다’고 단정적으로 썼는데, 다른 언론이 <팩트체크안센 예비역 접종에 ‘남녀 차별’ 글 정말 많았나>(2021.6.14.)에서 이를 확인해보니 이 시기 백신 글이 게시된 커뮤니티 내 안센 백신 관련 게시글은 68건이었고, 이중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은 단 3건뿐이었음. 차별을 주장하는 3건의 글이 이 커뮤니티를 대표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은 것도 아니었음.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글이 올라온 건 맞지만, ‘많다’고 보기 힘들고 주목도가 높은 글도 아니었음.



## 6. 장애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언론이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장애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장애인권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장애인 차별은 잘못된 사회의 시선, 불평등한 제도나 정책 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 <장애 교원 부족 실태 연속보도>(2021.7.21.~8.3.)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사를 뽑지 않아 낸 벌금액이 385억이라고 보도함. 장애인 교사가 없는 이유, 이로 인한 문제와 해결방안도 잘 살펴봤음. 특히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음. 이 보도는 장애 교원 부족 실태에 대해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달의 기자상을 받음.

😊 <탐사K/코로나19 장애인 대책 있나>(2022.2.8)는 코로나19 피해 여파를 가장 혹독하게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다각도로 짚었음. 코로나19 진단, 격리, 활동지원, 재택치료 돌봄 지원 등에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줘, 독자들의 공감을 높였음. 해당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음.



- 장애인 시위 등이 발생했을 때, 시위로 인한 불편만을 부각하지 말고 장애 차별 현실과 개선방향을 함께 짚어주세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의 지하철 타기 선전전 등을 보도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강조하는 보도가 매우 많았음. 장애인 단체의 시위 이유와 배경, 한국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높 이려는 노력도 필요함.

## 나. 장애인의 자존감을 존중해주세요.

-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지켜주세요.
- 언론 노출 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세요.
- 촬영을 허락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감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주세요.

☹️ <○○○의 멈춰버린 시간>(2019.7.27.)에서는 장애인의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일부 흐림 처리된 장애인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 장애인의 어머니가 관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근접 촬영된 장애인의 둔부가 일부 흐림 처리된 채 노출되는 장면, 침대에서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로 앉아 있던 장애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부 흐림 처리된 장애인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이 방송되었음.

**다. 장애에 대한 분류와 정확한 명칭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 장애의 분류와 정확한 명칭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척추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 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 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직장, 대장, 소장이나 방광자율신경 등의 손상 으로 인한 배설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 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비하 용어	자제 용어	권장 용어
	정상인, 일반인 (장애인의 반대 말로 쓰일 경우)	비장애인
불구자, 병신, 불구, 애자	장애자	장애인
앉은뱅이, 절름발이, 절뚝발이, 찔뚝이, 찌따, 조막손, 육손이,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곰배 팔이, 꼬추, 곱추, 곱사등이, 땅딸보, 난쟁이		지체장애인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애꾸, 사팔뜨기,	장님, 소경, 봉사, 사팔	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말더듬이, 벙어리, 아다다, 아자		언어장애인
백치, 저능아, 바보 천치,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또라이, 열간이, 띠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정신분열증, 정신장애	조현병
언청이, 언청새님, 꾀보, 흑부리		안면장애인
배냇병신		선천성 장애인
간질환자		뇌전증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인

**라.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구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앓다 △병 어리장갑 △장님 꼬끼리 (다리) 만지기 △눈 뜯 장님 △눈먼 돈 △외눈박이 ○○ △깜깜이 회계 △절름발이 ○○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 <하프타임병어리 냉가슴 앓는 지역 예술인>(2020.5.11.), <FIBA 아시아 오락가락 행보, KBL·WKBL 병어리 냉가슴[MD이슈]>(2021.2.14.), <○○○ ‘도쿄 아파트’에 맹공... “꿀 먹은 병어리”>(2021.3.21.), <“나랏 돈 =눈먼 돈 아니다”...1년간 ‘453억’ 환수한 권익위>(2021.4.9.), <순천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외눈박이 의결’ 비판>(2021.5.17.), <눈 뜯 장님 아니고서야...다중 이용 판매시설 불법 방치한 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2021.6.9.) 등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관용구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은 표현은 지양해야 함.

**마.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부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장애 자체보다는 사람에 집중해주세요.



## 바. 장애인에 대한 동정을 유도하는 감성적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말아주세요.

☺ <장애는 내 아들 개인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2018.12.19.)는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가 칼럼 집필, 강연, 집회 참여 등을 통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보도함.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보장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장애인 부모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2021. 5. 13.)은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상황을 전하는 보도인데, 부모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를 매우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음.

## 사. 장애인의 성취 결과를 보도할 때,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에 유의해주세요.

- 장애인을 활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표현해주세요. 장애인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해주실 것을 권합니다.

- ‘신체는 못쓰지만 정신만은 멀쩡하다’, ‘장애를 입어도 밝게 산다’, ‘비참하지만 의연하다’,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라는 식의 표현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주세요.

☹ <브레이크 댄스 국가대표 ○○○, 청각장애 딛고 일어난 사연 '감동'(노는 언니)>(2021.6.2.)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브레이크 댄스 국가대표의 이야기를 전했다. 보도에서 장애에 대한 내용은 “○○○ 역시 춤을 통해 감정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청기를 착용했다는 고백과 함께 청각장애를 딛고 일어난 사연은 감동을 일으키기까지 했다.”라는 한 문장뿐이었는데, 이를 제목에 넣어 '장애 극복 스토리'를 부각

☹ <소아마비 장애 딛고 40년 수학 난제 첫 해결… ○○○교수 “자신을 믿어야 성공할 수 있어”>(2021.12.22.)에서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 교수는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걷지 못하는 장애가 생겼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거절당하기도 했던 그는 모친의 헌신적 보살핌으로 13세 때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데 기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도함. 장애보다는 그의 학문적 성과를 부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음.

## 아. 운동선수의 장애를 선정적으로 부각하거나,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sup>4)</sup>가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당시 10대 일간지를 모니터링한 <모니터링 리포트>에 따르면, 스포츠 보도에서 피해야 할 내용으로 △장애인을 '인간 승리의 드라마' 혹은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 △'소아마비를 딛고'처럼 '장애 극복'을 강조 △신체 손상을 상세하게 부각하거나 장

4) 장애인 스포츠 보도 관련 사례는 <2021년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애와 질병을 동일시 △장애를 무기력함, 불행, 절망, 수치 등으로 묘사 △장애인 가족(특히 배우자와 어머니)을 죄인 또는 영웅으로 묘사 등을 꼽았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보도가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2021 도쿄 패럴림픽 당시 공영방송사는 저녁 종합뉴스의 패럴림픽 코너를 장애인 앵커가 진행했음. 메인뉴스 진행에 장애인 앵커가 출연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장애인식 개선과 국민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간승리 드라마’ 2020 도쿄패럴림픽, 24일 개막>(2021. 8. 22) △ <‘인간 승리 드라마’ 패럴림픽에 성원과 관심을>(2021. 8. 23) 등과 같이 유독 장애인 올림픽만 ‘인간승리’ ‘드라마’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장애인을 동정적, 시혜적으로 보는 시각이므로 지양해야 함.

☹ <팔이 없으면 입으로... 이것이 패럴림픽(2021.8.28), <다리를 못 써도... 우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는다>(2021.8.23), <발로 공 띄워 서브... 양팔 없어 라켓 물고 스매시>, <세계 유일 손발 없는 펜싱선수, 패럴림픽 2연패>(2021.8.27) 등과 같은 제목은 선수의 이름이 아닌 장애 상태를 알리는 것이었음. 선수의 이름을 보도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음.

☹ <청각장애를 넘어 ‘프로의 꿈’... 그의 곁엔 늘 아버지가 있었다>(2021. 8.31.)은 야구선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헌신을 중점적으로 보도함. 이처럼 가족의 희생을 강조해 영웅으로 묘사하는 보도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경기도 비장애인 경기처럼 경기내용과 성과 위주로 보도해주세요.

☹ 2021년 올림픽 수영 ○○○선수를 보도할 때는 “○○○는 8명의 선수 중 가장 빠른 0.58초의 반응 속도로 출발했습니다. 초반 스피드는 경이로웠습니다. 100m를 49초 87에 주파했는데 세계기록보다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2위와 큰 격차를 벌리며 150m까지 1위였지만, 막판이 아쉬웠습니다. 체력을 소진한 ○○○는 점점 힘이 빠졌고 결국 1분 45초 26, 7위로 레이스를 마칩니다.”라고 보도했음. 반면 직후 열린 패럴림픽 ○○○의 경기에 대해서는 “가슴의 태극기를 두드리며 당찬 모습으로 결승에 나선 ○○○.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물살을 가르니다. 혼신의 역량을 펼친 ○○○은 개인 최고 51초 58의 기록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라고 보도함. 장애인 선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런 기록을 냈고 몇 위를 했다’로 마무리해 비장애인 보도와 차이가 났음.

- 선수가 장애를 갖게 된 경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가 쓴 ‘패럴림픽 금(金) 15개 스토리’>(2021.08.26.)에서는 “○○○는 왼팔에 장애가 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왼팔이 탯줄에 감기면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기능도 약하다. 왼손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고 장애를 상세히 보도함. 스포츠 중계를 할 때 캐스터와 해설자들은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전하는 경우가 많음.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천재다'처럼 특정 유형의 장애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며, 이런 고정관념은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폐=천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다양하다>(2022.7.20.)와 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범주와 특성 등을 설명하고, 천재성에 대한 오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도하는 내용은 바람직합니다. 해당 보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극복하거나 없애야 하는 상태가 아니다”며 “다만 사회적 기술 훈련과 문제 행동 치료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치료의 목적”이라는 의료인들과 자폐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담았음.

**차. 비하 발언이나 악플 등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 장애인 xx 간호해봤자...” ○○에 악플 쓴 20대 검찰 송치>(2021.1.29.)는 장애인인 유명인의 배우자에게 장애를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음. 그러나 보도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과 심각한 혐오 표현, 2차 가해 글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④항(선정보도의 금지) 등 위반으로 한 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

☹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8.6.7.)에서 만취한 채로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추돌한 후 도주한 사건을 주제로 대담했는데, 출연자가 “저런 경우는 만취자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발언했음. 이 사건은 만취자에 의한 사건·사고임이 명백했음에도 정신장애를 ‘사고를 낸 만취자’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한 것임.

**카. 장애인이 범죄에 연관되었을 때, 장애를 부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특히 범죄 발생 시 정신장애인 연관성을 추측해 보도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라면줄게 말하지마” 정신병원서 60대 환자, 10세 남아 성폭행 의혹> (2021.10.15.)는 일반적인 경찰발 범죄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였음. 아직 사건의 자세한 내막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 성폭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라고 보도함. 정신질환과 성범죄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기사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정신질환 환자’로 반복 묘사할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울 수 있음.

☹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7.6.18.)에서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초등 학생을 유인 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대담 중 진행자가 10대들의 SNS 문화와 게임 등을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야기 했음. 그런데 해당 발언 뒤에 맥락 없이 “그런데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실과 가상을 더 분간을 못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빠지고 심취하면 사실상 걸어 다니는 폭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음.



## 라. 장애인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와 장애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을 때는 장애를 부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천원 안 줘서”>(2021.5.5.)은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60대 남성을 공격했다’, ‘A씨는 조현병 병력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었다’라고 언급함. 또한 방송 화면 하단부에 <피의자, 조현병 병력 있는 것으로 알려져>라는 자막을 노출하는 등 피의자의 정신질환과 해당 범죄와의 인과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신질환이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의견제시’ 조치

☹️ <아기 창박으로 던져 죽인 발달장애아 ‘무죄·치료감호’ 확정>(2016.11.24.)는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는 식으로 묘사했음. 이런 보도는 ‘장애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



## 7. 정신질환 보도와 인권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 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2022년)을 참고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수의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 1) 정신질환과 관련 용어 사용에 유의해주세요.

#### 가. 다음과 같은 표현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해야 하는 표현	설명
(정신질환자) 잔혹범죄, 참극, 난동, 흉기 테러, 시한폭탄 등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이거나 자기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
(정신질환자) '낙인 찍혀', '꺼리는', '불명 예스러운' 등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정신병자 취급하다. 정신병적 범행, 정신병자 같은 행동 등	정신질환에 빗대어 심각성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표현

#### 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순화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양하는 표현	권장하는 표현
괴짜, 미치광이, 광인, 정신병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로 진단받은
비정상적인 행동, 기괴한 행동	흔치 않은 행동, 이상행동
(병원에) 갇힌, (병원) 신세, 감금, 끌러가다	(병원에) 치료중인,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회복 중인



## 2)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길 권합니다.

☹️ <“편의점도 차려줬지만” 정신질환자 존속살해 비극, 언제까지>(2022. 2.17.)는 모든 정신질환자를 패륜 범죄자로 간주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소지가 큼. 보도 내용에는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정작 제목에서 ‘정신질환자’와 ‘존속 살해’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세 가지 용어로 정신질환자의 존속살해 비극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연상시킴.

☹️ <치료방치 끔찍한 범행으로 조현병 존속범죄, 치료·복지 연계 절실>(2022.3.26.)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복지 연계라는 정책적 대안을 다루고 있지만, 보도 제목에서 ‘끔찍한 범행’, ‘조현병’, ‘존속범죄’라는 자극적인 세 단어를 사용하여 독자가 대책에 대한 관심보다 조현병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우려가 있음.

☹️ <조현병 40대, 흥기 들고 파출소 난입… 테이저건으로 제압>(2022. 10.27.)은 제목에 사용된 ‘조현병’, ‘흥기’, ‘파출소 난입’이라는 용어로 인해 조현병의 위험성을 강조했음.

☹️ <“제2의 ○○○” 될 뻔. 부탄가스 560개 쌓아두고 불 지른 남성>(2022.10.27.)은 정신질환자 관련 화재사고를 다루면서 사망자 5명, 부상자 17명을 낳은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 이름을 사용했고, 보도에서도 그의 사진을 사용함. 이러한 보도는 시민에게 해당 사건과 ○○○ 사건을 동일시해 불안감을 키울 수 있음.

### 3)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목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비율 및 강력범죄 비율은 각각 0.6%, 2.2%(경찰통계 연보, 2020)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쉽게 정신질환자와 연결짓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조현병 환자 '묻지마 범죄', 5명 중 1명은 감형받았다>(2020.6.17.)는 다수의 정신질환자가 범죄에 대해 이유없이 면죄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시비 걸고 고의 추돌...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어쩌나>(2022.9.14.)는 정신질환 운전자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 운전자의 사고통계나 근거에 대한 취재가 부족함. 충분한 근거 없이 마치 정신질환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양산한다는 듯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음.



#### 4)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기를 권합니다.

☹️ <어느 고시원 20대女 남기고 간 쓰레기...전문가 “조현병 의심”>(2022. 7.11.)은 여성이 쓰던 고시원 방이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전문가의 언급만으로 무조건 ‘조현병’으로 추정하고 이를 제목으로 보도함. 이런 보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키워 정신장애인이 주거임대차 관련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분노 사회 대한민국... 4명 중 1명 또 우발 범죄>(2022.8.12.)은 우리 사회에 우발범죄가 늘고 재범률이 높다는 기사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조기 치료와 소득불평등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단순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정신질환으로 진단받는 것은 구별되어야 함에도 이 기사는 이를 구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우발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음.

#### 5) 관련자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권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이나 잔혹성을 강조하기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세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포함해주세요. 관련자 의견을 보도할 경우, 내용 변경이나 각색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 6) 정신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www.mentalhealth.go.kr>),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실 것을 권합니다.



## 8. 이주민, 난민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는 이주민, 외국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주민, 난민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이주민·난민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공존:그들과 우리가 되려면>(2022.1.17)은 5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경기 안산시 이주민을 만나, 그들의 개인 생애사를 가감 없이 보도함. 기존 이주민 보도와 달리, 이주민 아이들의 시선을 잘 담았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조명했음. 특히 한 초등학교가 민원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정도로 인근 한국인 학부모 상당수가 OO초등학교를 기피하는 ‘코리안 플라이트’ 현상이 나타나 한국인 학생이 6명뿐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공존에 따른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을 잘 짚었음. 또한,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국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이주민의 계층이동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음.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음.



**나. 이주민·난민을 폄훼, 모욕, 비하, 조롱, 차별,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처음엔 차별적 의미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남용을 통해서 의미가 변질된 용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주민·난민을 향한 혐오표현엔 말이나 글뿐 아니라 몸짓, 무시, 침묵 등의 행위, 기호,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 표현	순화 표현	권고 사유
다문화 가정	이주민 가정	‘다문화가정’은 널리 쓰이는 단어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통 동남아시아 국적의 국제결혼가정, 이민자 가정 등의 가족 형태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됨. 그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틀로 이용되며, 멸시와 차별, 혐오로 이어지기도 함. 따라서 다문화가정 대신 이주민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권함.
조선족	중국동포 재중동포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은 애초 비하의 의미를 담은 용어는 아님. 그러나 오랜 기간 ‘조선족’은 미디어를 통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은 것처럼 묘사되었고, ‘조선족=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인식으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2018년 4월 27일,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서울시의 모든 공문에 적용되는 행정용어에서 ‘조선족’을 ‘중국동포’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한편 국립국어원과 한국어문기자협회가 만든 <이런 말에 그런 뜻이? - 차별과 편견이 낳는 말들>(2010)에서는 ‘조선족’을 ‘재중동포’라고 부를 것을 권함.

- 이주민들의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어서 와 한국은 두 번째지?..코로나 탈출 불법체류자 ‘재입국 허용’?> (2020.3.8.)은 미등록 외국인이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코로나 탈출 불법 체류자’, ‘역대급 혜택’ 등으로 표현함. ‘특별 자진출국 제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이전부터 법무부가 체류 관리 목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임에도 마치 미등록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처럼 오인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임.

⊘ <사실‘無비자 제주’ 악용한 불법 입국 정부가 막아야>(2018.9.27.)에서는 “제주도가 2002년 특별법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제주는 국제 관광 도시가 됐다. 그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칫 테러범이나 불순 세력의 잠입 통로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주장함. 무비자 입국을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들어 ‘불법체류자 급증’을 이와 무관한 난민과 연관시켜 ‘테러범’, ‘불순세력’ 등으로 암시했음.



- ‘난민’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아파트 전세 난민 이곳으로 몰리니…빌라 전셋값도 ‘경총’>(2021.8.5.) 등은 재화·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난민’으로 표현하고 있음. 난민이 아닌 사람에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표현이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난민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인권 침해를 은폐하고 난민 개념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음.

☹️ <“비정규직은 코로나 노동 난민…실직 경험 31%로 정규직 7배”>(2020.9.21.) 보도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백신 부족 사태, 일자리 부족 현상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코로나 노동 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밖에도 <코로나19에 ‘의료 난민’된 치매노인…장애인 이중 차별까지>(2021.8.20.), <부스터샷으로 세계 양극화…‘백신 난민’ 생겨나나>(2021.8.12.) 등 난민을 빗댄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다. 이주민·난민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당사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이주민·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특히,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외국인과 난민의 존재 여부부터 언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불안한 주민들...제주서 불법체류자 범죄 잇따라>(2020.4.10.), <20대 취준생 죽게 만든 가짜 '○○○ 검사' 잡고 보니 조선족이었다>(2020.5.14.), <"담배 좀 달라"며 한국 남성 습격해 돈 뜯어내고 달아난 난민 신청자들>(2020.8.14) 등의 보도는 불법체류자, 이주민, 중국동포, 난민, 난민 신청자 등의 범죄를 강조하여, 이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차별적 인식을 부추김.

☹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9.3.14.)에서 중국동포와 무관한 다른 살인 사건을 전하면서, 진행자가 "예전에 그 조선족의 극히 일부 폭력, 집단이 청부를 받고 시신을 유기할 때 통에 시멘트를 부어서 바다에 집어던지는 사건", "조선족도 아니고 폭력집단도 아니고 20대 평범한 부부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발언했음. 끔찍한 중범죄나 시신 유기 등은 '조선족'이나 '폭력 집단'만 벌이는 것이 아닌데도 매우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중국동포를 차별했음.



-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묘사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문래동도 붉은 수돗물...“일부 이슬람 난민 소행일 수도”>(2019.6.21.)는 서울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자 ‘이슬람 난민이 수도권의 수돗물에 테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함. 보도는 “근래 국내에 급격히 유입 중인 ‘이슬람 난민’ 중 일부 ‘극단주의자’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그 근거로 “21일 정보당국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이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짚었으나 명백한 근거나 개연성은 없었음.

**라. 전염병·재난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불황이 이어질 때, 이주민·난민을 원인 제공자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주세요.

☹ <○○○ “○○○ 대표,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해야”>(2019.6.20.), <○○○, ‘외국인 노동자 혐오’ 앞세워 극우 포퓰리즘과 손잡나>(2019.6.21.) 등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옹호하고 이를 위한 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서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임을 보도함. 이처럼 정치인이나 종교인, 영향력이 있는 발화자의 인권침해적 발언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확실한 근거 없이 이주민·난민 등을 감염병의 원인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2020.1.29.)는 일명 '차이나타운'을 찾아 그곳 시장이 비위생적이라고 보도함. 보도에는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행에도 노상에 진열한 채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여럿했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인들도 많았다"라면서 그 근거가 되는 장면으로 "노상에는 고기, 순대, 탕후루(각종 열매를 꼬치에 꿰어 사탕 물을 묻혀 굳힌 중국 전통 과자), 도넛 등 음식 대부분이 바깥에 진열돼 있었다. 맨손으로 길거리에 진열돼 있는 탕후루를 만지는 관광객과 목을 만지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다"고 기술했음. 또한 "○○○시장 공영 주차장 쪽 흡연금지 구역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모여 담배를 피운 후 가래침을 길바닥에 뱉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보도했음. 이는 중국동포를 비위생적이고 위험에 감탄한 이들로 규정하는 보도였으며, 혐오표현에 해당될 수도 있음.



**마. 이주민·난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일방적 관점으로 희화화 또는 수동적 존재나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앵커의 시선/부끄럽습니다>(2019.7.8)는 한국 남성의 이주 여성에 대한 폭행 사건을 전하면서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베트남은 여전히 삼강오륜이 살아 있는 유교국가입니다. 결혼하는 처자가 지킬 네 가지 덕목, 4덕을 노래하는 이런 민요도 많습니다.(중략) 4덕은, 집안일 농사일 잘하는 공(工), 용모를 가꾸는 용(容), 언행이 상냥한 언(言), 그리고 웃어른 잘 모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幸)입니다 (중략) 순종적이라는 베트남 아내들도 모진 시집살이에 눈물지며 이런 구전가요를 읊조린다고 합니다. “며느리로 왔다가 시어미가 얼마나 잔인한지, 더 살 수 없어 친정으로 간다오...”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시어미’를 ‘한국 남편’으로 바꿔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라고 보도함. 보도는 베트남 여성의 미덕을 칭찬하고자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가부장적 표현은 베트남 여성 당사자에게는 불편한 요구이며 차별적 행위가 될 수 있음.

**바. 이주민·난민 관련 행사, 미담, 사건 사고 등에서 흥미 위주로만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사. 본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민·난민의 국적, 인종 등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 인cheon공항에서 287일간 체류했던 한 난민 가족의 경우 다수의 보도에서 성명, 국적, 난민신청 사유 등의 일부 신상정보가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가족은 국적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국적국에 난민신청 사실이 알려져 지인들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음. 일부 언론사는 명확한 설명 없이 난민 당사자에게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신원을 노출함.

☹ 2018년 10월 20일 평등 행진의 사전행사인 난민 환영 문화제 “Refugees Welcome” 행사 당시, 취재진에 모자이크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부 언론이 스태프 부스를 찾아와 얼굴을 노출해야 행사가 생생하게 담길 수 있다며 모자이크 해제를 요청함.



아. 난민을 보도할 경우 난민 발생의 배경과 역사, 난민의 국제법적 권리를 명시하여 난민과 내국인 상호간의 이해와 관용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난민 촬영 시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주에서 난민 신청 절차 중인 난민의 현장 리포트 보도(2018.6.29.) 중 난민 신청인 9명의 얼굴이 그대로 방영됨. 9명 중 2명이 얼굴 비공개 약속을 받고 촬영에 응했으나 방송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1명은 자신을 촬영하는 지도 인지하지 못했음.

☹️ <풍등 날리다 고양 저유소 화재 유발 혐의 스리랑카인 체포>(2018.10.8.) 등은 수도권에서 저유소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이 한 이주 노동자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하자, 용의자의 국적을 공개하고 제목으로 강조함.



## 9. 노인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노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 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인 관련 보도와 인권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노인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해주세요.

😊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2020.10.3.)은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한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도임. 보도는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를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음. 또한 코로나19가 촉발한 노인 소외 심화와 디지털 기로부터 질병, 범죄 정보와 유튜브를 통한 정보 취득, 디지털 기기와 교육을 통한 대안 제시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이 있게 다루었음. 특히 보도는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 대안 제시에 집중하여 보도 후 여러 노인 유관 단체 등이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해당 보도는 디지털 소외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해법을 제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으며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함.



- 노인의 자아실현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노인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 <GPS와 리어카:폐지수집 노동 실태 보고서>는 '한국의 빈곤 노인은 왜 폐지를 쫓냐에 대한 고민으로 보도를 시작했음. 기자는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리어카에 GPS를 부착해서 폐지수집 노동 실태를 보도함. 빈곤 노인들의 노동 시간, 노동 환경, 노동 대가를 분석하고, 빈곤 노인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진 이 보도는 이달의 기사상과 이달의 방송기자상, 한국방송대상 등을 수상함.

- 연령을 이유로 노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 <“노인을 위한 무임승차는 없다?”…지하철 세대갈등 재점화>(2021. 6.16.), <노인빈곤 보고서④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2020.10.19.) 등은 노인 빈곤에 대한 기획보도임. 그러나 소제목에서부터 <“노인 일자리 확충, 세금 낭비”… 청년들 무분별 노인복지 반대>로 청년의 반대를 부각. 노인 일자리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 일자리 부족과 직접 관계가 없음에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김.

## 나. 노인 사례 보도 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 <노인을 이해하는 방법 中정신적 노화…노인의 고집>(2020.1.6.)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짚는 보도였음. 세대 갈등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정신적 노화’로 한정해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했음. 특히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이들은 특히 재력이 있는 남성 독거노인이다. 재산이 없으면 정부의 복지 시스템에 기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 재산이 외려 독으로 변한 셈이다.”라는 내용에서, ‘재력이 있는 남성 독거노인은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표현은 그 상호관계성이 부족하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무능한 노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다.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단순히 연령 문제로 연결 짓지 않고, 제도 개선의 대상으로 접근하도록 권합니다.

☹ <“여기 말곤 시간 보낼 곳이 없다” 문 닫힌 탑골 찾는 노인들>(2021. 6.19.)은 탑골 공원을 찾는 노인들을 스케치한 보도임.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다양해진 측면이 있는데, 특정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인 것처럼 일반화하여 노인을 할 일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묘사한 측면이 있음. “노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탑골공원만은 변함 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사 내용도 노인 일반을 ‘변화에 뒤처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음



## 라. 노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 질환 등에 의해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 한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임. 고령자와 신체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얼마나 정밀하게 부여할 것인지 2022년부터 3년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후 제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이 제도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만 소개하고 있음. <노인은 야간 고속도로 운전 못하나.. 조건부 면허 추진>(2021.6.7.)도 제목에서부터 ‘노인’을 명시했음. 이처럼 해당 제도가 누구를 위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만을 부각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음.

☹️ <‘우한 폐렴’ 유행인데 무상 보급한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서 내놓고 기침하는 노인들>(2020.1.30.)은 노인들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거나 “현 상황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보도함.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할 수 있음에도, 노인층만을 특정하여 문제로 부각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마.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심어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늙은 것도 서러운데”...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년 노동자’>(2021.7.4.)  
 는 경비, 돌봄 등 분야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노년 노동자들의 노동 참여  
 율은 늘고 있는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한다며 고령층  
 노동 문제를 짚어본 보도임. 그러나 제목의 “늙은 것도 서러운데”, 본문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 장시간 노동하는 고령층 노동자”라는 표현은 노인  
 의 업무 능력과 노동 능력에 대한 우려와 편견을 키울 수 있음.

☹ <“용돈 벌고 삶의 활력도”...성공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2021.5.24.)  
 에서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데 용돈도 벌고 삶의 활력도 찾  
 을 수 있어 만족도가 무척 높습니다. (중략)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  
 려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종업원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라  
 고 보도함.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정당한 노동임에도, 노인 일자  
 리라는 이유로 ‘용돈’을 벌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자칫 노인의  
 노동이 지니는 가치를 폄훼하거나 노인은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 바. 노인이 취약하고 허약한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55년생에 드는 복지비 6조…“노인 의료비가 폭탄”>(2020.1.6.)은 고령화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비와 복지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노인 의료비를 ‘폭탄’이라고 표현함. 해당 기사 전체가 55년생에 제공될 복지비용을 예측했는데, 이처럼 숫자로만 나열하여 노인에 진입하는 1955년 출생자는 물론이고,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만 대한다는 인상을 줌.

## 사.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보호자 나가자 노인이 돌변했다”…‘공포의 문턱’ 넘는 노동자들>(2021. 5.1.)은 가스안전 점검원 등 고객의 집을 방문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짚는 보도였음. 성추행 등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제목에서부터 ‘노인이 돌변’, ‘공포’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

## 아. 노인을 희화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틀딱’ ‘꼰대’...비아냥 속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권 ‘곤두박질’>(2018. 10.30.)은 “틀딱, ‘꼰대’, ‘할매미’ 등 노인 비하 단어가 온라인상에 자주 등장하면서 노인의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인 인권, 노인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음.

## 자. 노인 취재 시 보도의 의도와 목적, 보도 방식, 보도 후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CCTV에 담긴 할머니의 악몽>(2021.1.22.)는 80대 노인의 성폭력 피해 상황이 담긴 CCTV를 그대로 방송함.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으나 성추행 행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그런다” 등 가해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음. 설사 성폭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보도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자녀가 설치한 CCTV의 성폭행 영상을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범죄 사건 보도 등에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철서 노인 목 조르며 “쳐봐!”... 가해자는 중1, 처벌 못한다고?> (2021. 1.22.), <영상직접 찍은 동영상에 덜미...폭행 논란 중학생들, 노인학대 죄 적용>(2021.1.27.) 등은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청소년이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한 사건을 전한 인터넷판 보도로서 폭행과 폭언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함. 때문에 가까운 범행의 양상과 심각성을 보도하더라도 굳이 잔혹한 폭행과 폭언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까지 게재할 필요는 없을 것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



## 10. 아동·청소년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보도와 인권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아동·청소년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아동과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 <구하라 시리즈-빈곤 동네와 주거 빈곤 아동>(2021.5.~6.)은 지역에 숨겨진 낙후 주택을 찾아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조명하는 보도였음. 빈곤 아동의 신체 질환은 물론 강박증, 낮은 자아존중감, 어려운 교우 관계 등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가감 없이 전달함. 이 보도는 지역 내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음. 해당 보도 이후 관계 당국이 주거 빈곤 아동 실태조사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해당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 지역신문 컨퍼런스 금상 등을 수상함.



## 나. 아동과 청소년을 비하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잼민이, 급식충, 등골 브레이커, 초글링, 롬나무, 휴먼급식체 등)과 이들을 차별하는 표현(중2병, 아이, 초딩, 중딩, 고딩)을 자제해야 합니다.

☹️ ○○○ 방송사가 공식 SNS 계정에 영상 홍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잼민짜’라는 단어를 썼다가 사과함.

-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신조어, 특히 특정 행동과 어린이를 합성한 ‘주린이’, ‘요린이’, ‘부린이’, ‘산린이’, ‘토린이’ 등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2022년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함.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사람에 대한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멸시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게 되어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밝힘.

☹ <초딩 요리이들의 즐거운 요리수업>, <요즘 요리이, 고추장 대신 만능 조미료>, <요린이도 백주부로 변신,, 똑똑한 인덕션 눈에 띄네> 등에서 ‘요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주린이’는 <주린이 가이드>, <주린이의 1타강사 193만명 째한 삼프로TV 인강도 불티>, <주린이 해외투자 시작은 eft-etn으로>, <주린이 캔들차트 잘 보는 방법> 등으로 다수 사용됨. <산린이 인증샷> 열풍에 대박났다. 매출 2배 뚝 인기폭발 제품> 등 산행 초보를 지칭하는 표현도 기능성 등산복 등의 보도에서 자주 사용됨. 골프와 합성한 ‘골린이’, 테니스와 합성한 ‘테린이’, 헬스와 합성한 ‘헬린이’ 등도 대부분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음.

- 민법상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sup>5)</sup> 따라서 ‘훈육’이나 ‘체벌’ 등의 표현을 지양하고 상황에 맞게 ‘폭력’, ‘학대’라는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12살 아들 체벌한 어머니 입건... 후속 대처 논란>(2022.10.18.) 등 많은 보도에서 ‘체벌’, ‘훈육’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5) 2021. 1. 26.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던 제915조가 폐지되었음.



#### 다.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해주세요.

☹ <기절놀이 뇌손상>(2019.10.23.)에서 진행자가 사건을 소개하고 피해 학생과 아버지 친구들이 사건 당일에 관해 이야기했음.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뒤에서 목을 조르자 피해 학생이 버둥대다가 기절하여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반복 노출함.

☹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 납치해 트렁크에>(2019.8.16) 등 다수의 보도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 세운 차량의 트렁크를 연 후 달아나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들어 차량의 트렁크에 집어넣는 모습, 이를 말리던 다른 여성을 힘껏 밀어 쓰러뜨리고 전 여자친구를 다시 차량의 트렁크에 집어넣은 후 바닥에 넘어진 여성을 재차 세게 밀어 쓰러뜨린 뒤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노출함.

#### 라.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아동과 청소년의 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촬영하며 또래 폭행 또 있었다 이틀간 맞아>(2019.10.22.)에서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을 다룸. 이때 자료 화면으로 가해 학생이 침대 위에서 피해 학생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해 학생이 서 있는 피해 학생의 몸 위에서 압박한 상태로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 처리하여 노출함.

**마. 아동·청소년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분 아니라 부모나 가족, 거주지, 학교 공개 등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보도인 <광주의 분노>(2019.3.12.)에서 법원 인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창문을 통해 “전두환은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함. 사생활 침해 금지 위반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바. 범죄 사건 보도 시 아동, 청소년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아동학대 사건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감 있는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대처방법,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해주세요.**

☹️ <암수범죄<sup>6)</sup>, 아동학대를 부검하다>(2022.2.6.)은 국내 최초로 최근 2년 치 아동 학대 형사 사건 1,406건을 전수 분석해 통계 수치에 가려졌던 아동학대 범죄의 실체를 심층 분석함. 해당 보도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통념을 ‘팩트체크’하고, 아동학대 범죄 종류, 가해 장소, 가해자 특성 등 유형별 분석으로 범행 장소에 따라 학대 피해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과, 판사의 주관에 따라 범죄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끌어냈음. 이 보도는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 등을 수상함.

6) 범죄가 실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다 해도 신원파악 등 해결이 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



## 나. 아동학대 피해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사건명을 피해자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대부분 '정인이 사건'으로 줄여서 불렀음. 이처럼 피해 아동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 2021년 1월 9일 ○○○, ○○○○ 등이 강북구 한 편의점에서 내복 차림의 아동이 발견되었다면서 보도했음. 아동학대에 관심이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해당 아동을 '내복 아이', '내복○○'라고 명명했음.
- ☹ 2020년 9월 인천에서 아동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아들을 '라면 형제'라고 명명하는 언론이 많았음.

**다.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학대행위 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라. 가족의 형태(한부모, 양부모, 이혼, 입양 등)와 종교, 국적, 체류자격 등은 아동학대와 직접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보도에서 상세한 정보제공은 특정 가족 형태와 계층,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 ☹ <장기 파열된 3살 베트남 아기. 엄마·동거남이 학대?>(2020.11.12.)에서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와 3살 남자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찾아왔습다.” 등을 언급하고, “함께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동거남도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해 경찰이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국적을 밝히지 않고, 외국인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이 적절했음.

## 마. 아동학대 보도 시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주세요.

- 아동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 영상, 음향 등을 자극적으로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업수 등의 의무) 제2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혹한에 거리서 발견된 3살 여아,..“도와주세요”>(2021.1.9.)에서 기자가 “한 여성이 어린 아이를 옷으로 감싼 채 들어옵니다. 옷이 흘러내리자 내복만 입은 아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대소변으로 젖은 바지가 부끄러운지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라고 발언하며, 어린이의 영당이를 그대로 보여줌. 이 아동의 인권을 생각했다면 아예 이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음.



-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추측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는 등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인천 화재 아동 사망사고 당시 많은 언론이 '라면 형제 사건'으로 명명하며 이들이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났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화재 원인은 라면이 아니라 불량난이였음.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 당시 '라면'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함. '라면'을 언급한 것은 ○○일보였으나, 이후 모든 언론이 이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받아썼음.

#### **바. 취재 보도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2012년 나주 성폭행 사건 당시, 한 방송사 기자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의 언니를 찾아내서 "마음이 어떠냐.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음. 부모의 동의 없었다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에 해당함.



## 11. 성소수자 보도와 인권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 소수자 관련 보도와 인권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성소수자 인권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부적절한 표현은 순화어를 사용하길 권합니다.

부적절한 표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권고 표현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성적 지향을 표기하면서 굳이 '연애'를 붙임으로서 성적 지향이 마치 개인적 기호나 즉흥적 선택, 유희에 불과한 것처럼 폄훼함.	동성애 동성애자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	이들 표현은 동성애가 마치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에 불과하며 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어 부적절함.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으로 표현을 권함.	성적 지향
호모, 게이, 항문성교자, 성중독자	호모 섹슈얼에 대해 비하적으로 표현하거나, 동성 간 성행위를 항문성교로 통칭하고, 동성애를 성에 중독된 사람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부적절	성소수자



<p>(동성애) '조장' '만연', '유행', (동성애) '은밀한', '파문', '논란', (동성애에) '빠져', '즐거'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 '경악'</p>	<p>동성애는 조장하거나, 만연하거나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서 부적절한 표현임. 동성애에 빠졌다, 즐긴다 등의 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 채,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부적절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충격, 경악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수자 인권 보호 관점에서 주의해야 함.</p>	
--	--	--

**나. 성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권합니다.**

**라.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커밍아웃’을, 범죄 사실이나 부정적 행위를 한 것처럼 자백하는 표현으로 혼용하거나, 조롱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커밍아웃: 동성애자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성 정체성을 밝히는 의미로서, 범죄 사실 자백 등 부정적이거나 희화화된 의미로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실패도 젊음의 한 부분입니다>(2011. 2.16.)에서 “그동안 대졸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내도 제가 대학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하고 절 퇴학시켰던 모교를 찾아갔습니다.”라고 보도함. 인터뷰이 본인이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적절히 순화하여 보도하기를 권함.

☹ <○○○의 음식잡설①한국 스타 셰프의 허와 실>(2011.3.38.)에서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이제는 ‘수석 졸업’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공롭게도 에드워드 권의 의혹 이후다. 자, 다음엔 누가 ‘커밍아웃’ 할 것인가”라고 보도함.



## 마. 사건·사고에 성 소수자가 연관된 경우, 성소수자의 젠더를 부각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보도본부핫라인>(2019.4.10.), <사건반장>(2019.4.10.) 등 다수 방송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 방송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남성인 공범과 연인관계’, ‘자택을 자주 드나드는 영상 확보’, ‘일탈행위’, ‘동성 간 관계가 짐작되는 진술’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고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성적 지향’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함.

☹ <몰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 부끄러운 민낯>(2019.4.10.)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하게 성적 지향을 노출했음. 또한 “○씨의 경우 몰몬교 신자로 해당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는 등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라면서 그의 성적 지향을 ‘부끄러운 민낯’으로 비하함.

## 바.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댓글 등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 성소수자 이용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특정 연예인에게 입장을 밝히려며 비난이 집중되었음. 이 사실을 전하거나 연예인 ○○가 발표한 입장을 보도하는 다수의 보도(2020.5.11.~12.)에서 “종교 집단 시설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표현하시더니 게이 모임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이 자기 나와바리(구역)이라고 하더니 왜 이번엔 조용하냐”, “가만히라도 있지, 신나게 특정 종교 깔 때부터 알아봤다” 등의 인터넷 상의 댓글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음. 기사 제목과 본문 모두 인터넷 댓글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댓글들을 인용 보도한 것은 부적절함.



## 12.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와 인권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관련 보도와 인권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 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인권향상을 위해 보도해주세요.

☺ <전법 사각지대 탈북민>(2022.6.10.)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이 남한에 정착·적응하는 과정에서 불교계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도함. 또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운영 현황을 불교계와 비교 분석했으며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 탈북 과정에서 종교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세히 보도했음. 이 보도는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함.

#### 나.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 공개 시 명확한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 범죄나 사회 부적응 등 일부의 부정적 사례를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북한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다문화 가정 아닌 순수 혈통...> 말 많은 탈북 여성 결혼 전단지>(2014. 8.7.)은 탈북 여성 결혼 전단지의 문제점을 보도했음. 그러나 해당 전단지를 캡처 사진으로 보도했고, 비하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함. 네티즌의 반응이라면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비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음.



## 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선불리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 25일 서거...김여정 계승>(2020.4.26.)은 명백한 오보였음.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 여부는 남북 및 국제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충분한 검증 및 확인 없이 보도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2018.5.19.)는 북한이 2018년 북미회담에 따른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당시, '외신 언론인에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이는 오보로 확인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주의' 조치.

☹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2013.8.29.) <김정은 포르노 추문 옛 애인 현송월 기관총으로 공개처형...국정원 확인>(2013.12.10.) 등은 북한 현송월이 김정은의 애인이며 음란 혐의로 기관총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함. 그러나 2015년 현송월이 모란봉악단장으로 등장, 2018년 1월에는 평창올림픽 참가로 한국 방문까지 하면서 오보로 확인됨.

## 바.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보도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들의 신분을 강조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 <“손가락 자른다” 협박 여친과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탈북자>(2021. 5.24.)에서는 제목과 내용에서 가해자가 탈북자임을 밝힘. <이별 통보 여친 감금·성폭행 후 생매장.. 20대 탈북민 징역 35년>(2021.8.7.)에서도 피의자가 탈북민이라고 제목에 보도함. 통상적인 경찰 또는 법원발 강력 사건 보도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탈북자’ 또는 ‘탈북민’이라는 특정 신분을 노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성할 우려가 있음. 강력범죄는 누구나 저지러 수 있다는 상식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을 지목함으로써 그 집단이 유독 범죄를 많이 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음.



### 13. 언론보도 속 인격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는 언론이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위의 규정 중 개인의 인격권 침해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주세요.

##### 가.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성관계 좋아하는 멤버?” ○○○, ○○○ 실명 폭로까지>(2021.7.6.)에서 그룹 멤버의 폭로를 빌미로 연예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보도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제1항(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음.

☹ <○○인터뷰/○○ 호텔 예약 내역 공개 “○○○과 2년 열애 맞다”>(2018.8.23.)에서 열애설이 돌던 일방 당사자의 폭로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하고, 예약한 호텔명, 투숙 일자를 공개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 재학생 민폐 강남 모녀의 제주도 여행기>(2020.4.2.)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녀온 모녀에 대해 보도했음. 이 보도에서 당사자의 신상정보(이중국적, 현 거주지, 출신 고교, 특이한 경력, 소속 대학 및 학과, 아버지 직업)을 상세히 공개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한 보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 중인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차량 유리에 부착된 아파트 스티커 노출. 여기에 핸드폰 번호, 아파트 동 호수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결정이 내려짐

## 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한인 여성 프 도착>(2019.5.13.)에서 납치된 후 생환한 우리 국민의 얼굴을 노출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한 보도에서 모 초등학교 입학생 추첨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어머니와 딸이 추첨기를 돌리는 모습을 무단 촬영 및 사용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50만 원) 지급 합의(조정성립)



## 라. 개인의 질병이나 병명 공개에 주의합니다.

☹ <“내 몸도 힘든데 아내·엄마 노릇은 어떻게…병원이 낫죠”>(2017.7.14.)에서 집안일 부담 등으로 암 전문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 중인 여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 이때 암환자인 신청인의 신상(실명, 나이) 및 암 경력 등을 보도함. 이에 사생활 침해 등이 인정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200만 원) 및 해당 기사의 열람 및 검색 차단 합의가 이루어짐.(조정성립)

## 마.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타살설로 시끌>(2018.7.23.)은 고인의 시신이 이송되는 상황을 차량으로 추적하며 생중계 보도함. 보도에서 앵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충격일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저게 현장 라이브입니다, 현장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라고 발언해 ‘충격’ ‘라이브’ 등을 반복 강조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의결함.

**바.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용어	설명	보도 사례
홍어, 갯상도, 전라디언, 명청도, 핫바지, 보리문둥이, 낙동갈 오리알, 서울깍쟁이, 꽃제비 삼천포로 빠진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왜 찌질거려”..‘홍어○○’ 사과한 ○○, 이번엔 네티즌들과 설전>(2021. 11.5.)에서는 “최근 ‘홍어○○’라는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인 ○○ 교수가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들과 뜨거운 설전”,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한 ‘○○○을 위해 홍어○○ 씹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보도함.

**2) 공인의 인격권은 이렇게 보호해주세요.**

**가. ‘공인<sup>7)</sup>’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미제 살인사건을 다루며 희생자 유족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동의한 것보다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한 사례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금(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뤄짐(조정성립)

7) 공인 :사회적 지위나 직무, 재능, 명성, 활동, 의견표명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



☹ 모 지자체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국 꼴찌라는 취지의 기사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아버지와 딸의 사진을 무단 촬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25만 원) 지급 결정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을 경우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인이라 해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 ‘○○○’ 전도 포착>(○○○○뉴스, 2018.6.2.) → 유명 가수이자 연예기획사 대표가 종교집회에서 발언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사례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제2018-639호)

☹ <졸업사진 때문에 묻혔던 ○○○ ‘학폭’ 의혹…다시 수면 위로>(○○○○, 2021.4.13.) → 유명 배우에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학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 과거 학창 시절 사진을 공개함. 공인이라 하더라도 학창 시절 사진은 사생활 영역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함에 따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음.

## 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OOOO OO♥OO 1년째 목하 열애 중>(2020.12.27.)에서 열애설이 있는 연예인들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음. 이에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사생활 보호)으로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주의' 조치

## 라. 공인의 초상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2021.6.21.)에서 채팅 앱을 이용, 남성을 유인한 후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에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3인조 범인에 대해 보도함. 그런데 이 보도에서 사용한 삽화에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사용됨. 사회적 파장과 인격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제1항(명예·신용 훼손 금지) 위반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 마. 공인의 가족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상습도박 유죄선고 후 딸 쌍둥이와 세부 여행 떠난 ○>(2019.2.25.)는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유명 가수의 근황을 전하는 보도였는데, 딸과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2018.5.30.)에서 유명 래퍼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했는데, 미성년자인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 하차설, 아나운서 부인, 딸 사진? 잠자리, 아내와 불화? 상처를 받아...'울먹'>(2020.2.20.)에서 전 방송사 아나운서에 대한 추문을 보도하며 당사자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3) 이런 표현은 자제해주세요.

용어	보도 사례
막장 드라마 막장 범죄 막장 국회	<p>'막장'은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갱도의 막다른 곳'이나 '막장에서 광물을 캐는 일'을 뜻함. 그러나 우리는 희망, 엉망, 비논리, 선정적, 무책임 등의 다양한 의미로 '막장'이라는 표현을 앞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기를 권함.</p> <p>* 2009년 3월 3일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막장'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함.</p>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p>중독성이 있을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음식 앞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마약 마케팅'이 많음. 그러나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 약물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2022.10.17.)</p>



## II. 부록





## 기타 인권 관련 준칙, 가이드라인 모음



### 1. 인권보도준칙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한다.
  -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한다.
  -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제9장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1.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동의가 없는 한 성명, 출신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북한이탈주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

로 묘사하지 않는다.

다.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2. 언론은 통일이라는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바라본다.

가. 북한 주민의 경제 상황이나 외부와 고립되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다.

나.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유발 시 북한의 잘못은 지적하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는다.

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다.

2011년 9월 23일 제정

2014년 12월 16일 개정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 2. 재난보도준칙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재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은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제 1 장 목적과 적용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준칙은 다음과 같은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전쟁이나 국방 분야는 제외한다. ① 태풍, 홍수, 호우, 산사태,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과 이에 준하는 자연 재난 ② 화재, 붕괴, 폭발, 육상과 해상 교통사고 및 항공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원전 사고 등과 이에 준하는 인적 재난 ③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식수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④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 등 질병재난 ⑤ 위에 준하는 대형 사건 사고 등 사회적 재난

## 제2장 취재와 보도

### 1. 일반준칙

제3조(정확한 보도) 언론은 재난 발생 사실과 피해 및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4조(인명구조와 수습 우선)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포토라인 등 취재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5조(피해의 최소화) 언론의 역할 중에는 방재와 복구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6조(예방 정보 제공) 언론은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제7조(비윤리적 취재 금지) 취재를 할 때는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 사칭이나 비밀 촬영 및 녹음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제8조(통제지역 취재) 병원, 피난처, 수사기관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현장 데스크 운영) 언론사는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가급적 현장 데스크를 두며,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10조(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언론사와 제작책임자는 속보 경쟁에 치우쳐 현장 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

제12조(취재원에 대한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재난 발생시 급박한 취재 여건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취재원을 검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취재원의 전문성은 충분하며, 믿을 만한가
- ② 취재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 ③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가
- ④ 취재원의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 ⑤ 취재원의 정보는 문서나 자료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가

제13조(유언비어 방지)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제14조(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정정과 반론 보도)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독자나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반론 보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2. 피해자 인권 보호

제18조(피해자 보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신상공개 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 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20조(피해자 인터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



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21조(미성년자 취재)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피해자 대표와의 접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와 언론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와 같다.

제23조(과거 자료 사용 자제)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3. 취재진의 안전 확보

제24조(안전 조치 강구) 언론사와 취재진은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5조(안전 장비 준비)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제26조(재난 법규의 숙지)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충분한 취재지원) 언론사는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4.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제28조(구성) 각 언론사는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데스크 등 각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재난현장 취재협의체'(이하 취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가 현장의 여러 문제를 줄이고, 재난보도준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유효한 대안이라는 점에 유념해 취재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사전에 이 준칙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취재협의의 체에 참여하게 되면 준칙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권한) 취재협의체는 이 준칙에 따라 원활한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당국에 현장 브리핑룸 설치, 브리핑 주기 결정, 브리핑 담당자 지명, 필요한 정보의 공개, 기타 취재에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견 개선) 취재협의체는 재난관리 당국이 폴리스라인이나 포토라인 설정 등 취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대표 취재) 취재협의체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받을 경우, 과도한 취재인원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조작업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대표 취재를 할 수 있다.

제32조(초기 취재 지원) 취재협의체는 취재 초기에 취재진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생활용품이나 단기간의 숙박 장소, 전기·통신·이동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관계당국이나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취재협의체는 사후 정산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소요경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제33조(현장 제재) 이 준칙에 따라 취재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언론사의 취재진에 대해서는 취재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취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소속 언론 단체에 추가제재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언론사의 의무 제34조(지원 준비와 교육) 언론사는 재난보도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 비치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재진의 빠른 현장 적응을 돕는다.

제35조(교육 참여 독려) 언론사는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난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소속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언론사는 가능하면 재난보도 담당 기자를 사전에 지정해 평소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제36조(사후 모니터링)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서 돌아온 취재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나 의견청취,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다음 재난 취재시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3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언론사는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제38조(언론사별 준칙 제정) 언론사는 필요할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각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제39조(재난관리당국과의 협조체제) 언론사는 회사별로, 또는 소속 언론사 단체를 통해 재난관리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재와 사후수습,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제40조(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자체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준칙 준수 의사를 밝힌다.

제41조(자율 심의)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각 언론사별, 또는 소속 언론사 단체별로 자율심의기구를 만들어 준칙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42조(사후 조치)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제재 종류 등은 심의기구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 ① 한국방송협회 회원사, 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다.
- ②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신문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 ③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 부 칙

제43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개정)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5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14년 9월 16일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 3.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 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 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

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2021.03.0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2020. 12. 30.>
- ②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2020. 12. 30.>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4. 자살보도권고기준 3.0

### 전문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경찰과 소방 등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구체적인 장소 등을 보도하면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자살보호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1)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자살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자살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자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송 보도나 신문 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우선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3)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합니다.

4)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 지어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로 명확히 판정되기 전까지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 합니다.



5)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삼갑니다. : ‘연이은 자살’, ‘또 자살’, ‘자살 확인’, ‘자살의 전염’과 같이 자살이 유행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으며, ‘자살 성공’, ‘자살 실패’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1) 범죄 사건을 다루듯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3)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나 관련 기관의 초기 발표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1)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죽음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3)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사건 보도 시, 위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4) 이러한 원칙은 인터넷 방송, 1인 방송 등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전통적인 방송 매체는 물론, 다양한 디지털 매체(유튜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방송 등)에서 도 자살 사건을 다룰 때에 자살예방 관련 상징이나 사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도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1)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벼랑 끝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 ‘마지막 탈출구’, ‘~ 이기지 못해 뒤따라 자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2)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일가족 동반자살은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 교사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3) 자살로 인해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4) 자살을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모순, 제도 미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로 자살을 다루는 경우에도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 5)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알립니다. : 자살과 자살시도로 발생하는 폐해나 유가족의 고통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6) 자살예방을 위한 보도를 합니다. : 전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2013년 9월 10일 제정 / 2018년 7월 31일 개정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5. 성폭력 성희롱 사건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 1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 01 올바른 인식 갖기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을 침해당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바라보고 사건을 보도한다.
- 성희롱·성폭력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나 절제할 수 없는 성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과 성차별적 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
- 성희롱·성폭력이 낮은 사람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한다.
-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치유되거나 극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를 지양한다.
-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02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한다.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성폭력이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임을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사실 확인 등 형식적인 객관주의를 경계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로 보도한다.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한다.
-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실명으로 '○○○ 사건'이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03 선정적 자극적 보도는 지양해 주세요.

-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다.
-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 04 잘못된 보도는 또 다른 인권침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도해 주세요.

- 언론보도로 인해 사건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용하여 전달하는 보도를 지양한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정확한 표현 및 용어를 사용하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그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도한다.

#### 05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보도해 주세요.

-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 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선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한다.

## II 취재 시 유의사항

### 01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한다.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까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기록물(SNS, 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 등)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취재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 02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 낯선 사람의 접근만으로도 일상적 심리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먼저 이해한다.
- 사건 당사자나 가족은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당사자 등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을 보도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먼저 밝히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되,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 보도 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 사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하지 않는다.
-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호기심 어린



질문 또는 가부장적 통념에 근거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입증책임을 지우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 피해자나 주변인이 인터뷰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적절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III 기사작성 및 보도 시 유의사항

#### 01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직업, 용모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다.
- 문체는 간접적인 노출이다. 신원노출을 막아주는 완벽한 모자이크, 음성변조란 없다는 생각으로, 간접적인 노출 가능성도 최대한 차단한다.
- 피해자의 직·간접적인 정보가 많을수록, 구체적일수록, 범주가 좁을수록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높다.
-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상정보를 부각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의 제보자, 고소·고발인, 증인 등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및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 02 피해자가 실명 및 얼굴을 공개하거나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한다.

-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방식은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방식은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분과 얼굴을 공개하기보다 취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언론은 피해자에게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방식을 종용해서는 아니 되며,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전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고 방송에 적합한 표현 및 묘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점검하여 가십성 이슈로 소모되지 않도록 한다.

## 03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등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는다.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피해자의 습관, 기호, 질병, 장래희망, 성적 이력,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 사진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 04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할 경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높고, 일반인들에게도 성희롱·성폭력은 극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 언론은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알린 피해상황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보도하기에 적절한 묘사수위를 고려하고 표현을 정제하여 보도한다.
-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은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명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편견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빨리 치유하는데 악영향을 주며, 그렇지 않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05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측(피해자 개인, 가정환경)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왜 가해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왜 그 시각, 그 자리에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지를 궁금해 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반면 유독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왜 그 시각에 거기 있었는지,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긴 보도를 한다. 이는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옷차림, 피해자 거주지와의 접근가능성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의 원인 제공' 내지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도함에 있어 은연중이라도 '가치판단'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어떤 상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표현은 하지 않는다.

## 06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를 그러한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연상, 인식 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
-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필요이상으로 묘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과정, 양태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을 자



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몹쓸짓', '나쁜 손', '몰카', '성추문' 등) 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가해자의 사생활 보도가 자칫 지나쳐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거나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가해행위와 대조되는 가해자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 07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한다.

-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일방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방은 있을 수 있으나, 진실공방 프레임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증명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취재 및 보도를 진행한다.
-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 사진 등 자료를 기사에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수사 및 재판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서술한다.

## 08 성희롱·성폭력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부적절한 삽화, 영상 등을 사용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표현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건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영상 보도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 범행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범행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아야 하며,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범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연하거나 실제 영상을 보도하지 않는다.
- 영상 보도에 사용되는 자료화면 구성의 경우 취재 기자 1인이 아니라 촬영 기자나 편집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므로, 선정적 영상 보도를 막기 위한 공동의 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

## 09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재확산되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가해자피해자 간의 연애 및 성적인 관계 또는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경향을 경계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 통념을 확인하는 누리꾼의 반응이나 가해자 중심의 개인 의견, 사건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나 피해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폭로한다는 의혹제기 등을 여과



없이 단순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 후의 부정적 변화를 피해자 또는 미투 운동 탓으로 돌리는 보도는 피해자 및 피해를 폭로하고자 하는 자를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피해사실 폭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 10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대책,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언론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며,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여 보도한다.
- 언론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정보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알리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도 적극 보도한다.
- 사건 초기 뿐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한다.

2018년 제정, 2022년 4월 14일 개정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 6.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 전문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예방과 사회정책적 대책 마련 등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범죄 보도는 필연적으로 특정인의 인격권, 무죄 추정원칙,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며 다양한 인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 보도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2011. 9. 23.)의 세부 기준으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언론인들이 준수해줄 것을 권고한다.

### 총강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와 함께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범죄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가 가부장적 사회구조,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그릇된 성인식 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져 은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어왔다. 언론은 이런 맥락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각과 태도로 성범죄 보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언론은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언론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 부각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3. 언론은 성범죄를 사회적 성역할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기초해 피해자의 도적 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언론은 사회적 안전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은 성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이 겪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무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천 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언론은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개별적 성향-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함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언론은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언론은 수사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10. 언론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정보 등의 제공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적극 보도한다.

2012년 12월 12일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 7. 난민보호 가이드라인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재난이나 기아에 고통 받는 이미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51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나, 난민(難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성에 덧입혀진 이미지는 편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때입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보호에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I.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난민협약 및 난민법)

## II.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도에 대한 일반 준칙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 III. 난민의 특수성

#### 1. 박해의 위험성

난민은 기존의 사회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며, 언론은 그 이야기와 사실을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은 박해의 위험을 피해 타국에 비호를 신청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박해의 위험은 난민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 했다는 것은 곧바로 난민으로서 보호받는다 뜻이 아닙니다. 100명 중 약 3명만이 난민 인정받는 한국의 현실(출처:난민인권센터, 2018년기준 난민인정률 3%)에서, 대다수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불인정 받고 본국으로의 귀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때 타국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귀환시의 본인뿐만 아니라,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박해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난민법 제17조 및 제47조에서는 난민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난민 당사자의 동의 없는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그 밖에 난민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동의는 당사자가 언론보도의 내용, 방향, 배포 범위를 명확히 설명받은 상태의 명시적 동의에만 한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적 언론보도와 달리 개인의 신원보호를 엄격히 하는 난민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은 제9장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을 다루며,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동의가 없는 한 성명, 출신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한국에 난민보도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은 없었지만, 난민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규정에서 난민의 박해 위험성에 언론이 취해야 할 태도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 기존 사회의 난민에 대한 오해

난민은 타국에 비호를 요청하는 사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쉽게 부정적인 시선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내 난민이 이슈로 떠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외의 부정적인 시선은 언론을 통해 그대로 수입되었습니다. 그 시선이 동정이든 두려움이든 배척이든, 언론이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을 아주 손쉽게 심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 3. 일반화의 위험성

난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체 난민신청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도하지 마십시오. 사회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 또는 그가 속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북한이탈주민 분야 참조)

## 4.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의 필요성

난민은 한국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세계 곳곳의 상황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난민들의 희망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난민은 한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 14조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 제 13조는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를 떠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가 가진 권리이고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보도는 지금 잠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의 보도가 아닌,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 난민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 IV. 가이드라인

### 1. 당사자의 동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망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망명신청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는 당사자의 난민신청단계와 상관없이 무기한으로 계속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동의는 소극적인 수준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난민이 해당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언론이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은, 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국제 미디어의 영향과 방송 출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자의 동의는 적극적인 수준의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수준의 동의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고지와 설명을 포함합니다.

- 1) 보도의 목적과 주제, 해당 인터뷰의 위치와 역할 고지.
- 2) 보도의 배포방식(주간지, 일간지, 지역언론, TV방송)과 예상되는 독자/시청자의 규모에 대한 고지
- 3) 최근 관련 보도에 대한 여론과 해당 보도가 나갈 경우에 예상되는 대중의 반응에 대한 고지.
- 4) 사진의 게재 방식과 신원 공개의 범위에 대해 설명, 동의.

### 2. 사진촬영

원칙적으로 난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원과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을 취하십시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합니다.(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북한이탈주민 분야에서 발췌) 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게재할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사진 설명이 정확인지 확인하고, 사진

사용이 망설여지는 경우 본 사진이 TV노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는지 관련자들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은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난민신청 지위로 인해 부당한 차별과 적개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3. 관련자들의 발언 인용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의 경우, 한 단체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정부의 의견을 인용할 때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범위를 위해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발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4. 용어 사용 유의

언론은 난민에 대해 보도할 때,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적인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항목들을 근거로 증오 또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자료를 제공 또한 삼가야 합니다.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건과 관련하여 독자와 시청자에게 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국내/국제법상 통용되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짜난민”, “불법난민”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난민불인정자 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체류비자기한을 넘긴 사람에게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민 “홍수(floods)”, “난민으로 몸살” 와 같은 감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실에 충실하십시오.



## 5. 오보에 대한 대처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표면적인 보도(Superficial behavior)나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와 시청자들의 미디어 전문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면적인 보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뉴스의 내용을 부적절하게 연관짓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습니다. 특히 난민의 동의 없이 사진 및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처해야 합니다.

난민인권센터

2019.11.20.

## 8.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 I. 전문

언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독립적 인격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섭니다.

언론은 보도 과정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해 구제를 요청하면 언론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기를 권고합니다.

### II. 아동의 권익과 인권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를 먼저 고려하며, 독자 또는 시청자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자 극도의 아동학대입니다. 이를 '일가족 동반 자살', '일가족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학



대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훈육’, ‘체벌’ 등의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피해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진술·상담 기록 등을 보도하기 전에 친권자 등 보호자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인터뷰 방식·내용에 피해아동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또한 친권자 등 대리인의 의견이 피해아동의 의사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구별하여 보도합니다.

### III. 2차 피해 예방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행위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장,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되도록 보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하는 사진·영상·음성·삽화 및 실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사진·음성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학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사진 등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

한부모·양부모·이혼·입양·다문화 가정 등 피해자 또는 학대행위의심자의 가족 형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사회적 차별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종교, 국적, 체류 자격 등 피해자, 학대행위의심자의 신분을 특정하는 보도도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사건명에 피해아동의 이름을 붙이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도 해를 입을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또한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진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부추길 수 있음을 유념합니다.

아동학대 정황·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학대행위의심자의 진술, 수사 기록 보도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IV. 사실 기반 보도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후 상황은 물론, 취재에 응한 목적과 의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제목·본문에 결론을 미리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단일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해결 방법,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위를 선불리 판단하거나 추측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영상을 보도할 때, 화면과 인터뷰 내용 등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진실을 훼손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기사에 피해아동 측 진술만 담지 않도록 하고, 사건 전후 상황과 주변 인물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함으로써 보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노력합니다.

아동 주변인(친권자, 보호자, 대리인 등) 간 갈등·원한 관계에 기인한 아동학대 신고·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제보가 들어오면 악성 신고·제보가 아닌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도가 이혼 등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 금전적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제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 V.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언론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는 사건 내용과 함께 다음의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합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2022년 11월 18일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 9.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혐오표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1항)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모욕까지 혐오표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디어가 혐오표현을 다루는 관점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디어는 사회의 혐오표현을 막고, 시민의 인권의식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오히려 혐오표현의 복제, 유포, 확산의 매개체가 되어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0년경 일부 인터넷커뮤니티에 특정 지역과 여성,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등장했을 때, 여러 언론이 이를 그대로 전달하여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은 혐오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진 ‘여성 혐오범죄’라는 게 대부분의 사회적 인식이었음에도, 정작 언론은 ‘조현병 때문’이라는 수사기관의 발표를 받아쓰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혐오표현이 부쩍 늘어났지만 언론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 종사자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유효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미디어 종사자들은 막중한 저널리즘의 책무와 윤리의식 아래 모든 혐오표현, 나아가 어떠한 증오와 폭력의 선동에도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우리는 평소 혐오표현의 개념과 맥락,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발언 등에 혐오표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 ■ 혐오표현 개념과 해악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격 토론의 장을 왜곡하여 다양성을 본질로 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며, △차별적 사회구조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 ■ 혐오표현에는 몸짓, 기호, 그림 등도 포함

혐오표현은 표적이 되는 집단에 관한 부정적 관념이나 편견을 담고 있는 모든 표현을 뜻한다. 여기에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몸짓과 무시나 침묵 등의 행위, 기호, 그림 등도 포함된다. 세월호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투쟁을 벌인 행위, 브라질 축구선수를 원숭이로 비하해 바나나를 던진 유럽 관중의 행위는 대표적인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은 부정적 관념이나 편견에서 나오지만 “장애인은 착하다”, “흑인은 신체능력이 뛰어나다” 등 긍정적 고정관념도 당사자들에게는 혐오표현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2. 우리는 가부장제, 레드콤플렉스, 지역주의와 같이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관념들을 당연한 '사회윤리'로 포장하거나 '미덕'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 ■ 기존질서 유지수단으로 악용돼 온 혐오표현

외모와 신체, 나이에 따라 여성의 '상품 가치'를 매기고, 여성을 남성의 성적 도구로 묘사하는 것은 해묵은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은 국민을 훈육·통제하거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아내 무력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게 레드콤플렉스의 낙인을 찍거나(빨갱이, 종북), 특정 지역민을 비하하는 표현(홍어, 전라디언)은 오랫동안 독재 정부가 부추겨 온 혐오표현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사회가 혐오표현을 용인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미디어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

3. 우리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편견을 확산시키거나, 이들이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공포를 부추겨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 사회 불평등 심화로 확산된 혐오표현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면서 확산되는 혐오의 흐름이 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거나 “난민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는 등 사회적 소수자 때문에 다수 국민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 또는 추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곤 한다. “이주민이 일자리를 빼앗고, 탈북민이 재정을 거덜낸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역차별’로 매도하면서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기도 한다. 미디어 종사자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표출되는 현상 그 자체를 전달할 게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한 뒤 전달해야 한다.



4. 우리는 주요 정치인, 고위 공무원, 종교 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하는 혐오표현은 더욱 엄격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 ■ 정치인·종교인 등 유명인의 혐오표현은 더 위험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차별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와 지위에 있는가는 혐오 표현의 해악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요소다. 같은 혐오 표현이라도 유력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발화하는 경우 청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 ■ 대부분의 '막말'은 혐오 표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정치인이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 파업 당시 “밥하는 동네아줌마” 라고 말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으니 내국인과 차등 인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혐오 표현이 그렇다. “군 동성애가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거나 “에이즈환자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다” 등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인의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다. 미디어 종사자는 정치인의 의도적인 혐오 표현을 그대로 중계할 게 아니라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5. 우리는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혐오 표현은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비판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 허위조작정보로 증폭되는 혐오 표현

혐오 표현은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확산된다. 이런 경우 혐오 표현은 학문적 견해, 과학적 증거, 사실 보도의 외형을 띠기도 하고 학문적·정치적 논쟁으로 포장되기

도 한다. 통계나 사진처럼 객관적인 형식을 취하거나 얼핏 보면 중립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의 왜곡은 5·18 북한군 개입설이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역사 왜곡에서 흔히 나타난다.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된 자료들도,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교묘하게 배열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무리하게 부풀린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왜곡 및 허위조작은 대상 집단을 열등하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인종주의, 지역주의, 성차별주의, 외국인혐오증, 동성애혐오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 종사자는 이런 허위조작정보 및 왜곡된 정보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한 뒤 전달해야 한다.

6. 우리는 경제적 불황, 범죄,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권의 측면에서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전하겠습니다.

### ■ 혐오표현과 불황·재난의 책임전가

재난과 질병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때 혐오표현은 더 자주 등장한다. 불행의 원인을 다른 집단에게 돌려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재일 조선인들을 대량 학살한 게 대표적 사례인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2019년 6월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이 이슬람 소행일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혐오표현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그들이 위험한 집단이기에 그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고, 대상 집단에 대한 폭력의 명분으로 이용될 위험도 있다. 미디어 종사자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적대 현상을 단순 전달할 게 아니라, 사회적 분쟁의 책임이 특정집단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해야 한다.



7.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과 연구 등을 혐오표현으로 보고 이를 지적하겠습니다.

### ■ 역사적 사실 부정과 왜곡도 혐오표현

역사부정 표현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부정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다. 반인륜 범죄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집단은 사회적 소수자이고, 그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누적되어 집단학살로까지 나아간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반인륜 범죄를 부정하는 것은 반인륜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반인륜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 등 반인륜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부인·왜곡하는 것을 역사부정 표현으로 처벌하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한국방송작가협회·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국가인권위원회

## 10.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6.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19호  
 개정 2008. 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30호  
 개정 2010. 2.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55호  
 개정 2010. 8.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80호  
 개정 2010.11.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81호  
 개정 2012.12.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90호  
 개정 2014. 1.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  
 개정 2014.12.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개정 2015.10.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3호  
 개정 2016. 7.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1호  
 개정 2016.12.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3호  
 개정 2019. 9.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1호  
 개정 2020.12.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6., 2014.1.9., 2016.7.28.>

1.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8. “외주제작사”란 법 제2조제27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28.>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9.]

제4조(심의의 방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의 사항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08.9.2.>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⑨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⑩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⑪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 ⑬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⑭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⑮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⑯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 제2장 일반기준

###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①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②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15.10.8.>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3.]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대담 · 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 · 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 · 균형성 ·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제목개정 2014.1.9.]

##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 통계조사(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는 제외한다)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9., 2014.12.24., 2015.10.8., 2020.12.28.>

1. 조사의뢰자
2. 조사일시
3. 조사기관·단체명



#### 4. 조사방법

#### 5. 표본오차

#### 6. 질문내용

#### 7. 응답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14.1.9., 2016.12.22., 2020.12.28.>

③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④ 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⑤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20.12.28.>

⑥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2016.12.22., 2020.12.28.>

⑦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가 종료된 후 방송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20.12.28.>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방송은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이외에서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보도프로그램 등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9.23.>

④ 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제19조의2(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방송은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상품 등의 명칭·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인권 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2016.12.22.>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4.1.9.]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①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8.>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본조신설 2019.9.23.]

-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9.23.]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① 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 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22조(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9.9.23.]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 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 의(囚衣)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8.>

제24조 삭제 <2012.12.6.>

###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신설 2012.12.6, 2014.12.24.>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1. 재난·감염병등의 발생·진행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감염병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감염병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 ② 재난·감염병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③ 사업자가 재난·감염병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감염병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방송은 재난·감염병등의 피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8.>

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전문개정 2014.12.24.]

제24조의4(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방송은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 2.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 3. 그 밖에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전문개정 2014.12.24.]

####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생명의 존중)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15.10.8.>
- ③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0.12.28.>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3.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전문개정 2014.12.24.]

제28조(건전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8.]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제29조의2 삭제 <2019.9.23.>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2.>
-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2016.12.22.>
-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9.]

제34조(표절금지) 방송은 국내외의 다른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5조(성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4.1.9.>

④ 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9.]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2014.1.9.>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신설 2015.10.8.>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형의 구체적 묘사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①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2(자살묘사) ①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 · 방법 ·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방송은 자살을 미화 · 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39조(재연 · 연출) ①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 · 사고 등을 재연할 때에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기법(모자이크 · 음성변조 · 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실제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 · 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

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 ③ 방송은 허구의 소재를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했던 사건·사고가 아님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 ④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하거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피해자·가해자 또는 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3.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藥師)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한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8.]

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①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 ② 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 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③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28.]

제45조(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 방송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 프로그램 참여나 출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출연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잘못된 흡연·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 ⑤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여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 ⑥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제목개정 2020.12.28.]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7절 광고효과 등 <개정 2010.2.18, 2016.12.22.>

제46조(광고효과) ①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



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2.>

1.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이하 “상품명 등”이라 한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3.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노출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8.>

1.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2.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 등의 효능·효과 등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내용
4.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최대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관련 있는 특정기업의 상품 등에 부당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 ④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상품 등 또는 상품명 등의 노출이나 언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품 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소품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하는 내용
    3. 제47조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4. 제48조에 따른 가상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전문개정 2015.10.8.]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46조의3(안내·고지 자막) ① 방송은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2.22.>

1. 재난·질병·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 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써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행사. 다만, 행사명·일시·장소 등 행사안내를 위한 고지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3.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
  4. 수도물·전기·가스 중단, 지역 공사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5.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 ② 방송은 제1항제2호의 안내·고지 자막 및 자사 프로그램 예고자막을 지나치게 크게 고지하거나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본조신설 2014.1.9.]

- 제46조의4(중계방송 등) ①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경기장·행사장 등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자는 협찬주 및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의 후원사(이하 “후원사”라 한다)와 관련되는 상품명 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47조(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 ②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간접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5.10.8.]

제48조(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난등에 대한 방송이나 긴급속보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하게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다만,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되거나, 운동경기(이와 관련된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계하는 장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운동경기의 경우 선수와 심판의 장비를 포함한다) 위에 노출하는 내용. 다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관중 위에 노출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중요한 배경·소품, 자막 위에 노출하거나 이를 변형·왜곡시켜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5. 그 밖에 가상광고를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 ② 가상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가상이미지의 삽입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상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가상광고 자막은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가상광고 상품 등의 거래정보(가격, 구성, 위치·연락처, 행사기간 등 거래와 직접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이용 권유정보(품질·효능·기능·보증 등 구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업적 표현을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개정 2016.7.28.>
  4. 출연자 등이 가상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실제로 시현하는 내용
  5. 그 밖에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 ③ 가상광고가 출연자 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구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5.10.8.]



제49조(시상품) ①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 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협찬주 또는 광고주 등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으로 사용하거나 시상명과 함께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사업자가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

[전문개정 2014.1.9.]

제50조(상품판매) ①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46조 및 제46조의3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① 삭제 <2015.10.8.>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2015.10.8.>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2014.12.24.>

제52조(외국어)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9.]

## 제9절 기타

제53조(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①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금액, 사용주체,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포함



한 기부금품의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출연자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등 등록된 모집자가 아닌 자의 기부금품 접수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9.23.>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 ①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 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 ④ 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9.>

제55조(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방송사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1.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용어의 정의

1.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2. 제작진이란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사람들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자를,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출연자란 저작권법 제2조제4호의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또는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도 포함한다.

### III.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가 고용한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프리랜서와 제작사·기획사(소속 직원과 계약자 포함) 등 제작진, 성인 출연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스튜디오, 외부촬영지 등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준수되어야 한다.

### IV. 일반원칙

1.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방송사·제작진·출연자·보호자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이다.

### V.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1. 아동·청소년 출연과 캐스팅

가.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나, 방송 제작·촬영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로 예외로 적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아동·청소년의 출연기회와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사전설명과 동의

가.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출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진은 방송 제작·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방송출연 이후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3. 계약과 보수지급

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제작·촬영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출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라. 아동·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VI.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 1.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



조, 제23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2. 영유아 출연자 특별조항

가.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 대기, 촬영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 3.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가.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학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작·촬영시간은 가급적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이 가급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라. 제작진은 제작·촬영하는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4. 성관련 보호 등

가. 아동·청소년은 성적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이해하고, 성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광고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금지된다.

## 5.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 가. 건강과 안전 등 위급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나.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동기부여 등을 이유로 과도한 충격,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적인 언어표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나이, 성별, 장애, 인종 혹은 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재연이나 극 출연

- 가. 성폭행 등 범죄 장면을 연출할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배역을 시킬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공포나 불안 등을 느끼지 않도록 극 연출의 의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다.
- 나. 아동·청소년의 신분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아동·청소년의 흡연·음주 장면 등은 방송심의규정으로 금지된다.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흡연·음주 문화가 일상적인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설명한다.

## 7. 인터뷰 출연

- 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한다.
  - 1)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알고 있는가?
  - 2)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나. 아동·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그들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다. 아동·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방송해서는 안된다.

라. 아동·청소년이 범죄사건에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 인터뷰 동의를 얻었더라도 필요이상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공포, 불안 등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다.

## Ⅶ. 안전과 보호

### 1. 안전과 사이버 괴롭힘

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한다.

나. 아동·청소년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솔자나 안전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제작촬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 아동·청소년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2. 사생활보호 등

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성, 화면을 통해 학교, 거주지 등 장소나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Ⅷ.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1.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작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보호문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Ⅸ. 시행일 및 재검토 기한

1.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아동·청소년 보호는 국가, 사회, 개인 공동의 책무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방송 제작·촬영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진이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았나요?(※인터넷주소 링크)

※ 우리의 아들, 딸, 동생 같은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가이드라인을 읽어봐 주세요.

2. 아동·청소년의 출연을 위해 사전설명과 동의 절차 등을 갖추었나요?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등을 사전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3. 법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 시간을 알고 있나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①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일에 40시간 초과 금지. 다만, 15세 이상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 연장 가능 ②야간촬영(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은 금지. 다만, 15세 미만은 제작·촬영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청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자정까지 허용되고, 15세 이상은 청소년과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경우 허용

4. 아동·청소년의 학습권·건강권·휴식권 등 인권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 한다.

5.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도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6.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 건강과 안전 등 위급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7. 제작진 중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문제를 상의할 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



## 12.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정 1981. 11. 30.  
개정 1989. 10. 5.  
1996. 12. 13.  
전부개정 2004. 8. 23.  
전부개정 2005. 7. 22.  
전부개정 2008. 3. 18.  
전부개정 2011. 8. 22.  
개정 2014. 12. 15.  
2016. 7. 14.  
2016. 11. 21.  
2018. 7. 18.  
2018. 12. 19.  
2019. 3. 20.  
2019. 8. 21.  
2021. 1. 27.  
2021. 11. 24.  
2022. 6. 29.

### 제 1 장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헌법 제17조, 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 <개정 2014.12.15.>

-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개정 2014.12.15.>

[제목개정 2014.12.15.]

### 제2조 (명예훼손 금지)

- 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2항).
-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7조제1항).
- ③ 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8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27조제4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개정 2014.12.15., 2016.11.21.>

-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7조제4항). <신설 2014.12.15.>

#### 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 ① 언론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개정 2014.12.15.>
- ② 언론은 성폭력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2018.7.18., 2022.6.29.>
-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이나 성희롱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7.18., 2022.6.29.>

[제목개정 2014.12.15.]

#### 제5조 (유괴사건 보도)

언론은 유괴사건 보도에서 유괴된 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 ①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년법 제68조) <개정 2014.12.15.>
- ②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

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신설 2014.12.15.>

- ③ 언론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설 2014.12.15.>

[제목개정 2014.12.15.]

####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② 언론은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24.]

#### 제7조 (가정폭력사건 보도 등)

- ① 언론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신설 2022.6.29.>
- ②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사소송법」 제10조). <개



정 2022.6.29.>

[제목개정 2022.6.29.]

### 제8조 (신고자등 보호)

-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 (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3.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2 장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 제10조(보도 윤리)

-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9.>
-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9.>

### 제10조의2(차별 금지)

-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개정 2019.3.20.>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0.>

[본조신설 2016.7.14.]

### 제11조(재난 보도)

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범죄 묘사)

-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성관련 보도)

-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③ 언론은 간통, 원조교제 등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자살 보도)

-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단,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사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21.1.27.>

###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 장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 제22조(국가안전보장 등)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37조제2항).

[제20조에서 이동 <2014.12.15.>]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12.15.>]

### 제23조(국가기밀 누설금지)

언론은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98조제2항 및 제113조제1항,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21조에서 이동 <2014.12.15.>]

### 13. 신문윤리실천요강

####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정권, 정당 및 정파 등의 정치권력이 언론에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③ (사회적 책임)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공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 ④ (차별과 편견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 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노약자·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 제2조 취재준칙

언론인은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취재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도 안 된다.

- ① (신분 사칭·위장 금지)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된다.
- ② (자료 무단 이용 금지) 문서, 자료,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콘텐츠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재난 및 사고 취재)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재난 등의 수습 및 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 ④ (전화 및 디지털 기기 활용 취재) 취재원과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디지털 기기 등으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전화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의 방법으로 취재해서는 안 된다.
- ⑥ (부당한 금전 제공 금지)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으로 취재하거나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 제3조 보도준칙

언론인은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정보도)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③ (반론의 기회)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④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⑤ (보도자료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 · 폭력 · 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루어서도 안 된다.
- ⑦ (재난보도의 신중) 재난이나 대형 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⑧ (자살보도의 주의)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 ⑨ (피의사실 보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⑩ (표준어 사용)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 보도 ·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재판 부당 영향 금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 보도 ·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 · 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언론인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①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② (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취재원이 제공한 불특정 출처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④ (취재원과 의 비보도 약속)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했을 때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보도해서는 안 된다.

## 제6조 보도유예 시한

언론인은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유예 시한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① (보도유예 시한 연장 금지) 자의적인 협의로 보도유예 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 ② (보도유예 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유예 시한은 이를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피의자 · 피고인 · 참고인 등 촬영 신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인격권을 존중하되 최대한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④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⑤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18세 이하)일 경우 이름 ? 사진 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①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 된다.
-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 ③ (출판물 등의 표절 금지) 정기간행물이나 출판물 등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발췌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④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제9조 평론의 원칙

사실과 평론은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사실의 정론성) 사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정당·단체·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 ② (평론의 자유) 사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제10조 편집지침

언론인은 신문을 편집할 때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 ① (제목의 원칙)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② (편집 변경 금지)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크기·배치 등을 바꿔서는 안 된다.
- ③ (기고문 변경 금지) 사외 기고문은 기고자의 동의 없이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④ (기사 정정) 보도기사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 ⑤ (관련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⑥ (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 보도사진이나 영상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⑦ (기사와 광고의 구분)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지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⑧ (이용자의 권리 보호)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참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콘텐츠에 오류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 관리하며, 특히 청소년이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⑨ (부당한 재전송 금지)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명예 · 신용 훼손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보도, 저속한 표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 ·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②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을 할 때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 평론해서는 안 된다.



- ① (사생활 침해 금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디지털 기기 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공익을 위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 퇴폐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① (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 없이 청소년(19세 미만)이나 어린이(13세 미만)와 접촉하거나 촬영·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② (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③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④ (유괴·납치 보도제한 협조) 어린이나 청소년이 유괴·납치된 경우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 등의 보도제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 등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 ① (소유 주식 등에 관한 보도 제한) 언론인 본인, 친인척 또는 이해 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 전자화폐 등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주식 · 부동산 등의 부당 거래 금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주식 · 부동산 거래 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① (금품수수 및 향응, 청탁 금지) 취재 · 보도 · 평론 ·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 ②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취재원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 ③ (광고 · 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인에게 취재 · 편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인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 공익의 정의

신문윤리실천요강에 규정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② (공중 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환경 보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 (공중의 오도 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1957년 4월 7일 제정

1996년 4월 8일 전면개정

2009년 3월 4일 부분개정

2016년 4월 6일 부분개정

2021년 4월 6일 부분개정

한 국 신 문 협 회

한 국 신 문 방 송 편 집 인 협 회

한 국 기 자 협 회

## 14. 언론윤리헌장

### 서문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언론은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도우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날로 다원화하는 언론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원칙과 책무에 충실한 윤리적 언론은 시대의 요청이다. 이에 우리는 매체와 분야, 형태에 관계없이 보도와 논평에 종사하는 모든 언론인이 실천해야 할 핵심 원칙을 담아 언론윤리헌장을 선언한다.

#### 1. 진실을 추구한다.

윤리적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취재원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의도와 기술방식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 2.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윤리적 언론은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고,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설명한다. 윤리적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가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취재원 보호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



한다. 보도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는다. 보도에 영향을 미친 외부 지원과 후원 및 이해상충 소지 등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밝힌다. 투명성과 설명책임은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언론사 조직의 공동책임이다.

### 3.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미숙하고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도 이를 보도할 때는 윤리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 보도할 때는 인격권 보호에 더욱 주의한다.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중의 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 4. 공정하게 보도한다.

윤리적 언론은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갈등적 사안을 다룰 때는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보여준다. 윤리적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의 경중을 고려해 보도 내용의 양적·질적 균형을 맞춘다. 특정한 가치와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과 견해만을 선택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기사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는 자신을 방어하고 반론할 권리를 보장한다.

### 5. 독립적으로 보도한다.

윤리적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시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언론사 안팎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거부하고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율성을 지킨다. 독립적인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 편집과 경

영의 분리 원칙을 준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권력을 감시한다. 독자와 시청자의 의견과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보도에 반영하되, 건전한 비판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공격에 위축되지 않는다. 상업적 이해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6. 갈등을 풀고 신뢰를 복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

윤리적 언론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전달되고 교류되도록 한다. 대립하는 관점과 주장이 표출되고 조정될 수 있는 토론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갈등과 이질성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윤리적 언론은 사회적 신뢰를 창출하고, 공동체가 믿음에 기초해 운영되도록 제 역할을 다한다. 진영논리에 빠져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반대 세력을 과도하게 공격하지 않으며, 차이와 불화를 침소봉대해 갈등을 극대화하는 보도 태도를 지양한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해 비판적으로 전달한다.

## 7.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윤리적 언론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차별과 편견을 줄이려 노력한다. 언론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언론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를 발굴·보도해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킨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부추기는 표현, 특정 계층·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성차별 표현,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을 삼간다.

## 8.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한다.

윤리적 언론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한다. 언론인과 언론사의 도덕적이고 품위 있는 행동은



권력과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윤리적 언론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취재원에게 예의를 갖춘다. 또 올바르게 품격 있는 언어를 쓰도록 노력한다. 취재원과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9. 디지털 기술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윤리적 언론은 디지털 기술이 언론 활동에 미치는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뉴스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기술이 독자와 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한다. 참여와 공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해 뉴스를 생산하고 내용을 발전시킨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취재는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여론 조작 위험 등을 감안해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검증한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복제하거나 표절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작성해 보도한다.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오도하는 제목을 쓰지 않으며 기사를 수정했을 경우 수정의 내용과 이유를 독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작성자의 동의를 구하고 저작권을 보호한다.

#### 보칙

1. 이 헌장은 개인과 단체, 조직 등 모든 언론활동 종사자를 위한 것이다.
2. 이 헌장을 채택한 언론은 헌장 내용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3. 헌장의 시행과 개정 등을 위해 언론윤리헌장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1년 1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홍보협력과  
전화 (02)2125-9870 FAX (02)2125-0920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화 (02)2278-1990

---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산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